



2020년도 제21회  
한국법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 코로나 시대의 법교육



2020.11.28.Sat.14:00

ZOOM을 활용한 온라인 웨비나(Webinar) 방식

주최 한국법교육학회





## 학술대회 세부 일정

일 시		행사내용	사회
개회	14:00~	❖ 개회식	김자영 (공주교대 교수)
	14:10	❖ 학회장 인사	
논문상 시상	14:10~	❖ 법교육 논문상 시상	
	14:30		
연구윤리교육	14:30~	❖ 연구윤리교육	
	14:40		
Session 1	14:40~	<b>제1발표:</b> 코로나 19 시기 비대면 법학교육 사례를 통한 비대면 교육의 방향 - 서울시립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 발표자: 박 훈(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토론자: 전학선(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6:00	<b>제2발표:</b>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환경에서의 법교육 실 천 사례 연구 - 정치와 법 과목을 중심으로 - - 발표자: 서민경(김해영운고등학교 교사) - 토론자: 강병희(발곡고등학교 교사)	
<b>휴식</b>			
Session 2	16:10~	<b>제3발표:</b>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을 위한 경험적 연구 - 발표자: 윤성현(한양대학교 교수) - 토론자: 김수용(대구대학교 교수)	
	16:50		
총평 및 폐회	16:50~ 17:00	❖ 총평 및 폐회	



I. 코로나 19 시기 비대면 법학교육 사례를 통한 비대면 교육의 방향  
- 서울시립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 1  
발표자 : 박 훈(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자 : 전학선(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II.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환경에서의 법교육 실천 사례 연구  
- 정치와 법 과목을 중심으로 - ..... 19  
발표자: 서민경(김해영운고등학교 교사)  
토론자: 강병희(발곡고등학교 교사)

III.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을 위한 경험적 연구 - 한양대, 숙명여대,  
대구대, 서울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 ..... 51  
발표자: 윤성현(한양대학교 교수)  
토론자: 김수용(대구대학교 교수)

---



**코로나19시기 비대면 법학교육 사례를 통한  
비대면 교육의 방향**  
- 서울시립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박 훈(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한국법교육학회 제21회학술대회(2020.11.28)

**코로나19시기 비대면 법학교육 사례를 통한 비대면 교육의 방향  
- 서울시립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박훈 교수

---

## 발표자 소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 서울대학교 법대, 동대학원 석사 및 박사 졸업(상사법(세법) 전공)
- 일본 동경대학교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방문학자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현)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보교수
- 한국법교육학회(총무이사) (현)
-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현)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현)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위원(현)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 위원(현)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직, 본청 국장)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국회 입법지원 위원
- 제49회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2015년)

2

## 목 차

- I . 서설
- II . 비대면 교육의 의의와 법학교육 관련성
- III . 비대면 법학교육의 구체적 사례
- IV . 비대면 법학교육시 고려사항
- V . 결어

3

---

# I . 서설

---

## I . 서설 (1)

- 대학교육의 경우 칠판을 이용한 대면수업이라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프로젝터 사용, 파워포인트, 동영상 활용 등 기술적 변화를 반영한 방식으로 변화가 상당부분 진행
-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격리의 차원에서 대면강의가 제한되면서 비대면강의가 사실상 주도적인 강의를 되고 있음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강의의 유지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겠지만, 기술적으로 비대면강의가 가능함을 대학현장에서 전임교원이 직접경험한 계기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 대학교육에서 비대면강의 방식진행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예상

## I . 서설 (2)

- 대륙법체계하에서 법령에 대한 기본이해를 전제로 많은 학습량을 요구하는 법학교육의 경우도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롭기 어려움
- 학부차원의 법학교육을 어떻게 할지, 비대면수업의 형태로 법학교육을 어떻게 할지 동시에 고민해야 할 상황임
  - 법교육학회의 경우 법학자와 교육학자 등이 협력하여 바른 법학교육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필자가 동일과목에 대해 대면수업을 진행했던 수업, 비대면수업을 진행한 2020년 수업의 비교
  - 상사법 : 2020년 1학기 VS 2019년 1학기
  - 상속세및증여세법 : 2020년 2학기(진행중) VS 2019년 2학기

6

## II . 비대면 교육의 의의와 법학교육 관련성

7

## II. 비대면 교육의 의의와 법학교육 관련성

### 1. 비대면 교육의 의의

- 비대면 교육은 통상 온라인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짐. 대면 교육과 대응
-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로 가능
- 종전 대학의 경우 일부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대학에서는 온라인 교육이 대세가 된 상태
- 대학생의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작

8

## II. 비대면 교육의 의의와 법학교육 관련성

### 2. 비대면 교육의 현황(1)

<서울대학교> 2020년 2학기



출처 : <https://www.snu.ac.kr/coronavirus/guide?md=v&bbsidx=128768>

9

## II. 비대면 교육의 의의와 법학교육 관련성

### 2. 비대면 교육의 현황(2)

〈서울시립대학교〉 2020년 2학기(2020.8.20 현재)

#### 가. 비대면 수업(아래 두 가지 유형만 허용)

##### (1) 유형 1 : 교수자 직접 동영상강의

- 교수자가 직접 강의 동영상상을 플랫폼에 탑재하면 학생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영상을 보고 학습하는 방식
- 교수자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도록, 청각장애인의 경우 입모양이 내용 파악에 중요
- 동영상 분량(재생시간)은 강의 시간의 50% 이상으로(예. 50분 강의는 25분 이상)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시간(실시간 단독방 대화, 게시판 통한 질의응답 피드백, 과제를 등)을 가질 것을 권장
- PPT에 음성 삽입 등의 강의는 불허
- 타 교수자와 동영상 공유는 불허

##### (2) 유형2(실시간 화상강의)

- 실시간 화상강의(유형2)시 교수자 직접 동영상 강의(유형1) 혼합 사용 가능
- 동시형 대면/비대면 수업(미러링, 일부 학생은 등교, 일부 학생은 집에서 실시간 강의 내용 시청)도 가능

#### 나. 대면수업 : 아래 방역 수칙 준수하여 진행(생략)

10

## II. 비대면 교육의 의의와 법학교육 관련성

### 3. 비대면 교육 관련(코로나 19에 국한) 최근 선행연구(1)

- 김미은, 김민정, 오예인, 정수연, “코로나 19(COVID-19)로 인한 온라인 강의 대체가 간호대학생의 학습동기,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및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 20(17) | pp.519~541 | 2020.09 |
- ✓ 코로나 19로 인한 간호학 교과목의 온라인 강의 대체가 **간호대학생** 학습자의 학습동기,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 및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연구
- ✓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J시에 소재한 5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 ✓ 온라인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동기**로 나타남
- ✓ 간호대학생에게 간호학 교과목을 온라인 강의로 운영 시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사전에 평가하고 온라인 수업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수설계 및 수업운영이 필요

11

## II. 비대면 교육의 의의와 법학교육 관련성

### 3. 비대면 교육 관련 최근 선행연구(2)

- 서장원, “코로나19 시대, 전국 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강의 모습과 온라인 강의 시 나타난 현상 및 개선 방향”, 한국초등체육학회 | 한국초등체육학회지 | 26(3) | pp.93~112 | 2020.10
- ✓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 한 학기 동안 전국 교육대학교 **체육교육** 관련 강의의 모습과 온라인 강의 시 나타난 현상을 살펴보고, Post 코로나 시대에 교육대학교 체육교육 관련 온라인 강의의 개선 방향을 제시
- ✓ 지난 1학기에 전국 교육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의 진행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실제 강의를 진행한 전국 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11분을 선정하여 전화와 e-mail을 통해 강의 유형, 강의 방법, 과제제시, 평가 등에 대해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5분에게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느끼거나 생각한 것에 관하여 추가 면담을 실시
- ✓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체육교육과 온라인 강의의 개선 방향으로는 **정체성, 소통성, 창의성, 객관성, 통합성**을 제시

12

## II. 비대면 교육의 의의와 법학교육 관련성

### 3. 비대면 교육 관련 최근 선행연구(3)

- 김보영, 한승우, “코로나19로 인한 비자발적 ‘대학 온라인 강의’에 대한 만족도 연구”, 김보영 | 한승우 |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 교양학연구 | (13) | pp.7~31 | 2020.10
- ✓ A 대학의 경우 **자기주도 학습**과 **학습몰입도**에서는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토론과 토의와 질문 및 응답과 관련된 **쌍방향 의사소통** 관련에는 부정적인 반응
- ✓ 계열별 특징은 **예체능계열**에서 학습몰입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특정 계열의 경우에는 **교양수업**에 온라인 수업을 적극적 도입 필요. **공학계열**과 **자연계열**에서는 학습지속의양 정도가 낮게 나타나서 실험과 실습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학과에서는 온라인과 대면이 만날 수 있는 적절한 지점을 고민
- ✓ 학년별로는 **2학년**의 경우가 온라인 수업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반응, **3학년**의 경우 가장 긍정적인 반응

13

## II. 비대면 교육의 의의와 법학교육 관련성

### 4. 비대면 교육과 법학교육 관련성

- 법학교육의 경우 법령, 판례, 법이론 등을 교육내용으로 함
- 암기와 이해중 반복학습이 가능할 수 있는 비대면(온라인 촬영에 의한 반복학습 가능시) 교육은 암기에 강점을 가짐
- 질문, 답변, 토론 등을 통한 논리전개 및 심화학습의 경우에는 비대면 교육이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채팅, 별도 토론방 운영 등으로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방법이 있기는 함

14

## II. 비대면 교육의 의의와 법학교육 관련성

### 5. 법학교육의 비대면 교육 관련 선행연구(1)

- 신현탁, “온·오프라인 융합토론수업 사례연구 - 플립드러닝을 활용한 법학교육”,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법과인권교육연구 | 10(3) | pp.161~186 | 2017.12
- ✓ 교양법학 과목을 토론수업으로 진행하면서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의 사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려는 의도에서 ‘플립드러닝’ 방식을 활용한 사례연구
- ✓ 플립드러닝에 의하여 토론을 위한 사전지식을 제공하고 토론 참여도를 높일 수는 있었지만, 유연하고 창의적인 토론을 훈련시킬 수는 없었음
- ✓ 토론의 수준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2016년도 수업에서는 ‘수업 후 단계’ 를 ‘블렌디드 러닝’ 방식으로 보완하여 온라인 발표·토론을 실시하도록 개선 : 출석수업에서 이루어진 발표 및 토론에 추가하여 이후 1주일간 온라인 상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상호 토론

15

## II. 비대면 교육의 의의와 법학교육 관련성

### 5. 법학교육의 비대면 교육 관련 선행연구(2)

- 명순구, “MOOC에 의한 민법 교육, 경험과 진단 - 고려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원 | 고려법학 | (80) | pp.227~261 | 2016.03 |
- ✓ 2015학년도 제2학기 고려대학교에서 ‘민법’ 교과목을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로 운영한 사례 토대
- ✓ MOOC ‘민법’ 과 그 전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했던 ‘민법’ 의 여러 차이점 중 특기할 만한 것
- ✓ **수업준비**를 매우 면밀하게 했다는 점
- ✓ MOOC ‘민법’ 에서는 **목표 진도**를 무리없이 달성했다는 점
- ✓ MOOC ‘민법’ 은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Self-Directed Learning)을 촉진하는 동기가 되었다는 점

16

## III. 비대면 법학교육의 구체적 사례

17

### Ⅲ. 비대면 법학교육의 구체적 사례

#### 1. 수업사례의 개관

##### (1) 「상사법」 강의사례

- <1-1> 2019년 1학기: 대면수업(125명)
- <1-2> 2020년 1학기: 비대면수업 중심(사전동영상 촬영진행) (95명, 분반실시)

##### (2) 「상속세및증여세법」 강의사례

- <2-1> 2019년 2학기: 대면수업(120명)
- <2-2> 2020년 2학기: 비대면수업 중심(Zoom 실시간 진행, 사전촬영 및 판례부분 별도 사전촬영) (진행중 수업) (151명)

18

### Ⅲ. 비대면 법학교육의 구체적 사례

수업계획서		수업계획서		2019학년도 1학기	
<b>상사법</b> 교과구분: 권공선택(권공선택) 교과번호(분반): 251208(01) 교과목명(영문명): 상사법 (Commercial Law) 학점(시간): 3학점(3시간) 강의실용구분: 강의 수업시간(강의실): 수01.02.03/37-306 개설학년도: 2019년	담당: 조숙 교수: 연학차 이메일: phn@uos.ac.kr 홈페이지: 상법사랑 주소: 달빛초교(연학차)	새문안과 박동			
<b>성적 평가</b> <input type="checkbox"/> 출석 (20%) <input type="checkbox"/> 수시과제 (0%) <input type="checkbox"/> 기말과제 (0%)	<input type="checkbox"/> 학생포트폴리오 (0%) <input type="checkbox"/> 수시시험 (0%) <input type="checkbox"/> 기말시험 (35%)	<input type="checkbox"/> 참여도 (10%) <input type="checkbox"/> 중간과제 (0%)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input type="checkbox"/> 중간시험 (35%) <input type="checkbox"/> 서태소리평가		
<b>수업유형</b> <input type="checkbox"/> 블렌디드러닝 <input type="checkbox"/> 실기	<input type="checkbox"/> PBL <input type="checkbox"/> 토론 <input type="checkbox"/> 실계	<input type="checkbox"/> 외국어 <input type="checkbox"/> 융합트러닝 <input type="checkbox"/> 연학	<input type="checkbox"/> 통역학 <input type="checkbox"/> MOOC <input type="checkbox"/> 프로젝트	<input type="checkbox"/> MOOC <input type="checkbox"/> 서태소리평가	
<b>수업방법</b> 표절이란 타인의 공을 적절히 인용 할 경우명헌 표기 없이 자기가 쓴 것처럼 표시하는 것으로서 도덕적 양심을 저버리는 잘못일 행위입니다. 표절행 부정시험 재출제거나 표절행 자제를 사용하여 발표한 논문 등에도 전자 알림 처리한다. 심할 경우 영문으로 처리합니다.	※ 장애학생은 강의실 학업수행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02-6490-6273)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담당교수와 교과목 책임영양				
<b>이 과목에서는 상법총칙, 상행위, 회사를 중심으로 한 상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을 통해 회사의 설립,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문제를 다루고, 아울러 상법총칙과 상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한다.</b>	<b>구분</b> 핵심영양 수필영양	<b>핵심영양</b> 1. 상법총칙 2. 민사상행위 3. 회사법 4. 상법판례(법제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법제처 법문서 이용 가능)	<b>핵심영양</b> 1. 회사법 관련 실무적응을 위한 자문권이 사용될 수 있다 2. 민사상행위, 회사법, 상행위, 2019년 1학기 3. 민사상행위, 회사법, 상행위, 2019년 1학기 4. 상법판례(법제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법제처 법문서 이용 가능)		
<b>수업목표</b> 1. 상법, 그중 회사법을 중심으로 회사에 대한 법제도를 이해한다. 2. 법률, 관례 등 법해석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을 학습한다. 3. 회사에 관한 주요 영문 문헌을 통해 법전문가로서 전문성과 분석력을 함양한다.	<b>교과목 과제</b>				

### III. 비대면 법학교육의 구체적 사례

주	수업내용	수업방법	교재	출력사용자 : 박준
1	3/6 1. 당사법 개념의 선택과 관련성 2. 당사법 기법 방법 3. 당사법 기법 방법 4. 당사법 및 강제집행 방법	강의	강원 법원 (http://www.jb.go.kr) 01-1000-0110000	준비물, 과제, 기타
2	3/13 1. 당사 회사의 의미, 종류, 설립, 운영, 변경, 합병, 해산 등 2. 합법회사-합법, 내부관계, 외부관계, 사외 관계, 해산과 3. 합법회사의 의미, 종류, 운영, 변경, 합병, 해산 등	강의	이강선 박준, 111-147	
3	3/20 1. 합법회사-해산과 절차 2. 주식발행 3. 주식회사의 의미, 설립, 내부관계, 외부관계, 사외 관계, 해산과 4. 합법회사의 의미, 종류, 운영, 변경, 합병, 해산 등	강의	이강선 박준, 111-147 이강선 박준, 111-147	
4	3/27 1. 주식회사의 설립 2. 주식의 권리	강의	이강선 박준, 111-147	
5	4/3 주식과 주권	강의	이강선 박준, 111-147	
6	4/10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2. 주식의 포괄적 이전	강의	이강선 박준, 147-164	
7	4/17 1. 주식회사의 주권에 대한 보호성 2. 주권의 포괄적 이전	강의	이강선 박준, 147-164	
8	4/24 증권고사 - 출제문항 : 객관식 5지 선다형 또는 4지 선다형 / 35문항	시험		
9	5/1 회사의 기관(1): 주주총회	강의	이강선 박준, 164-183	
10	5/8 회사의 기관(2): 이사, 이사회, 감사, 감사위원회	강의	이강선 박준, 183-227	
11	5/15 1. 이사의 임명 2. 이사의 권한 3. 자문금의 감소	강의	이강선 박준, 228-251	
12	보강주강			
13	5/22 1. 사채 2. 주식회사의 해산	강의	이강선 박준, 273-304	
14	5/29 1. 합병 2. 분할 3. 흡수 4. 양도회사의 태생 특례	강의	이강선 박준, 304-332	
15	6/5 1. 합병회사 2. 양도회사	강의	이강선 박준, 333-363	
16	6/12 기말고사 - 출제문항 : 객관식 5지 선다형 또는 4지 선다형 / 35문항	시험		

2020/11/16 03:53:51

UosCourseReview2

2 / 2

서울시립대학교

### III. 비대면 법학교육의 구체적 사례

← → C 주의 요함 | uclass.uos.ac.kr

채팅  
 게시물관리  
 일정표

목차명	구분	학습기간	학습시간/통과점수	보기
상사법				
15주 상사법의 개요		2020-03-16~2020-08-31		
1주차 1차시 상법과 다른 법률의 구조	온라인		25 분	예
1주차 2차시 상사법과 세법의 관계	온라인		25 분	예
1주차 3차시 법령과 관례의 학습방법	온라인		25 분	예
2주차 합명회사		2020-03-16~2020-08-31		
3주차 합자회사		2020-03-16~2020-08-31		
4주차 유한 책임회사		2020-03-16~2020-08-31		
5주차 주식회사의 기본구조		2020-03-16~2020-08-31		
6주차 주주와 주식		2020-03-16~2020-08-31		
7주차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등		2020-03-16~2020-08-31		
8주차 주식회사의 기관		2020-03-16~2020-08-31		
9주차 주식회사의 자본금		2020-03-16~2020-08-31		
10주차 주식회사의 사채		2020-03-16~2020-08-31		
11주차 주식회사의 기업구조조정 등		2020-03-16~2020-08-31		
12주차 유한회사와 외국회사		2020-03-16~2020-08-31		
13주차-총정리(1)		2020-06-08~2020-06-22		
14주차-총정리(2)		2020-02-01~2020-06-22		

서울시립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91) 02504 서울특별시 용인구 서유시립대로 163 (전농동 90) TEL: 02) 6490-6024  
COPYRIGHT (C) SINCE 2007 CENTER FOR TEACHING & LEARNING, UNIVERSITY OF SEUL. ALL RIGHTS RESERVED

관리사이트





### III. 비대면 법학교육의 구체적 사례

과제명	구분	학습기간	학습시간/통과점수	보기
상속세및증여세법		2020-08-01~2021-02-28		
1주차				
1주차 1차시	온라인	2020-08-01~2021-02-28	25 분	예
2주차				
2주차 1차시	온라인	2020-08-01~2021-02-28	40 분	예
2주차-중1교시-9월14일	온라인		45 분	예
2주차-중2교시-9월14일	온라인		55 분	예
3주차		2020-08-01~2021-02-28		
4주차		2020-08-01~2021-02-28		
5주차		2020-08-01~2021-02-28		
6주차(10월12일 수업관련)		2020-08-01~2021-02-28		
7주차(10월19일 수업 관련)		2020-08-01~2021-02-28		
8주차(10월26일 수업 관련)		2020-08-01~2021-02-28		
9주차(11월9일 사전촬영수업관련, 판례강의는 1)		2020-08-01~2021-02-28		
10주차(11월16일 수업관련)		2020-08-01~2021-02-28		
11주차(11월23일 수업관련)		2020-08-01~2021-02-28		
12주차(11월30일 수업관련)		2020-08-01~2021-02-28		
13주차(12월7일 수업관련)		2020-08-01~2021-02-28		
14주차(사실상 9주차, 별도11월2일중탕강좌)		2020-08-01~2021-02-28		

26

### III. 비대면 법학교육의 구체적 사례

#### 2. 비대면수업시 변화

##### (1) 「상사법」 강의사례

- 사전촬영으로 시간제약 없이 학생들 수강 강의
- 줌 실시간 수업 일부병행으로 학생들 의견 청취(2020년 1학기 코로나 19라는 특수성도 반영)
- 기말고사만 대면으로 실시

##### (2) 「상속세및증여세법」 강의사례

- 줌 실시간으로 사전촬영에 따른 학생들 시간선택은 제약(다만 줌 실시간 수업녹화후 제공으로 보완)
- 온라인강의 진행으로 수강생 확대(2019년 120명에서 2020년 151명으로 늘어남)(학교 및 학생들 요청 수용)
- 1시간 판례 사전촬영 병행

27

### III. 비대면 법학교육의 구체적 사례

#### 3. 비대면수업시 문제점

- 학생들과 교류(토론)의 거의 없음(화면을 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질문하고 답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조문을 지정하여 읽힘으로써 학생들이 집중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하기는 하나, 한계가 있음
- 대규모 강의의 특성일 수 있으나, 비대면수업이 좀 실시간 또는 학교 온라인강의실을 활용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생길때 학생들 대응이 쉽지 않음
- 출석관리의 경우 전자출결(코드번호 부여 방식 가능), 온라인강의실 출석상황 등으로 가능하기는 하나, 대리출석의 문제 노출
- 시험평가시 객관식 중심으로 진행됨. 비대면 실시는 기술적으로 쉽지 않음

28

## IV. 비대면 법학교육시 고려사항

29

## IV. 비대면 법학교육시 고려사항

### 1. 강의자의 입장

- 법제처 법령정보, 대법원 관례정보 등을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법학교육에 좀 더 적합한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음
- 수업 때마다 별도의 수업자료를 사전에 준비하고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함
- 학생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사례 제시 가미 고려
- 인터넷 접속, 화면, 소리 등 온라인 진행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필요(학교에서 학생지원으로 보완하기는 함)
- 출석, 시험에 대해 대면 때와는 달리 접근 필요(전자출결, 온라인시험 등)
- 실시간 온라인 진행시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 등 고려사항이 적지 않음
- 촬영된 강의자료를 추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법령이 개정되는 것 반영부분 고민 필요)
- 많은 학습량을 소화할 수 있어 법령 내용 전달에는 유리하나, 토론이 쉽지 않음(토론이 가능하기 위한 조별 토론방 개설등이 가능해지지는 했음)
- 학생들 학력격차에 대한 고려필요(장기결석자, 수업에 잘 따라오고 있는지 등)

30

## IV. 비대면 법학교육시 고려사항

### 2. 수강생의 입장

- 온라인 강의를 위한 기기 등 준비 필요
- 수업관련 법령은 사전에 온라인, 법전 등으로 준비
- 사전제공된 수업자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관련 기본적인 교과서와 병행 필요
- 이메일, 채팅 등을 통한 강의자와 적극적인 소통 가능
- 온라인 강의시 상황변화에 대해 공지사항등 수시 확인 필요
- 동의를 전제로 한 강의 녹화, 수업시 캡처 화면 사용 주의 필요
- 출석시 대리출석하지 않고 시험(온라인실시시)의 경우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노력 필요
- 녹화 수업진행시 미루어 듣지 않고 일정시간내 듣는 것 습관 필요
- 해당 수업을 듣는 동기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로스쿨 진학을 위한 수업, 취업을 위한 수업, 교양으로서 수업 등

31

## IV. 비대면 법학교육시 고려사항

### 3. 대학본부의 입장

- 교양법학으로서 학교내 대규모 강좌운영 가능. 다른 학교들과 역할분담과 가능할 수 있음
- 온라인 강의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필요
- ✓ 고사양의 컴퓨터, 영상장비(웹캠 등), 마이크, 강의촬영장소, 학교 서버 저장공간 확대 등
- ✓ 교수의 온라인 강의에 따른 강의부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위한 인력 지원도 고려 필요
- 학생들간 학력격차에 대한 대비도 필요
- 온라인 강의시 나타나는 여러 법령 및 학칙 위반에 대한 사전교육 필요
- 사이버대학교, 방통대 등 온라인 강의에 상당부분 특화된 학교의 경험 벤치마케팅 필요

32

## V. 결어

33

## V. 결어

- 코로나19로 인한 강제적 비대면강의 상황에서의 법학교육은 자칫 질 낮은 교육이 될 수 있음
- 코로나19 이전에도 비대면강의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비대면강의의 장점을 살린 대면강의와 병행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음
- 법학교육은 2009년 미국식 로스쿨제도의 도입이후 학부차원의 법학교육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여기에 비대면강의를 어느 정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변화를 꾀할 필요가 있음
- 학부차원의 법학교육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 법교육과 함께 법분야의 대학내, 그리고 우리사회 전체 법문화 정착에 기여할 부분임
- 대면강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학회 발표로서 학문적 의미를 갖는 데 한계가 있기는 하나, 법교육학회에서 법학자와 교육학자가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소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법학교육도 온라인교육에만 의지하는 경우 강의의 대형화, 대학내 협력을 통한 전체 과목수의 감소, 사교육과의 비교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보다 나은 학부차원의 법학교육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바임.

34

# 감사합니다

35

#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환경에서의 법교육 실천 사례 연구

## - 정치와 법 과목을 중심으로 -

서민경(김해영운고등학교 교사)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이론적 탐색
  - 1. 온라인 수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
  - 2. 온라인 환경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사례 및 연구 대상
  - 2. 연구 도구 및 자료 수집
  - 3. 자료 분석
- IV. 온라인 수업 전환에 따른 수업 설계
- V.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 환경에서의 수업 실천
  - 1. 온라인 수업에의 적용 과정
  - 2. 온라인 수업에서의 쟁점중심 글쓰기 활동과 토론 활동으로의 연계
  - 3.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의 프로젝트 기반(Project based learning) 수업
- VI. 마무리하며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갑작스럽게 시행된 상황에서 면대면 교실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탐색하였다. 연구자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수업이 이루어지는 수업 환경에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형태로 한 학기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한다는 것은 면대면 수업에 맞추어 설계된 수업 목표, 수업내용, 교수·학습전략, 평가 등 수업의 전 과정을 온라인 학습 환경에 맞게 재설계하는 활동이다. 이때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도 법교육에서의 성취기준 및 교과역량이 달성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가 실천한 수업 사례를 통해 온라인 학습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한 블렌디

드 수업은 오히려 학생들의 능동적인 탐구 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이 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하나의 수업 실천 사례로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하나의 설계 자원으로서 의미 있게 활용되어 법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 I. 들어가며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유례없는 4차례의 개학 연기의 상황과 함께 전면 온라인 수업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 3월 2일 개학을 준비하고 있던 학교는 3월 9일로 등교일이 1차 연기되었고, 이후 3월 23일로 2차 연기, 그리고 4월 6일로 3차례 연기되었다(교육부 장관 보도자료, 2020.3.17.). 개학이 연이어 미루어지며 학생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등을 활용하여 학생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온라인 학습 콘텐츠, 교과별 학습 운영 계획 등을 제공하는 등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등교 개학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교육부는 원격교육을 통한 정규수업으로 학생의 학습 공백을 해소하고자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을 결정·발표하였다. 4월 1일부터 1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며, 일주일 후인 4월 16일에는 고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2학년 및 초등학교 4~6학년이, 마지막으로 4월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순으로 시차를 두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표 1> 2020학년도 단계적 온라인 개학 개요

학 년	4.6~8.	4.9~10.	4.13~15.	4.16~17.	4.20~
고	3	휴업(3일)		온라인 개학(4.9.~)	
	1, 2	휴업(7일)			온라인 개학(4.16.~)
중	3	휴업(3일)		온라인 개학(4.9.~)	
	1, 2	휴업(7일)			온라인 개학(4.16.~)
초	4-6	휴업(7일)			온라인 개학(4.16.~)
	1-3	휴업(9일)			온라인 개학(4.20.~)

온라인 수업의 전면시행으로 대면 수업에 맞추어 설계되었던 수업과 평가 계획은 온라인 수업 환경에 맞추어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교육청에서는 온라인 수업 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MS팀즈, 구글 클래스룸, ZOOM 등 다양한 온라인 수업 플랫폼에 대한 각종 연수를 지원하여 교사들의 수업 테크놀로지 활용능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집중하였다.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보다 근본적으로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수업을 무엇으로 채우고, 어떻게 한 학기의 수업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앞서있었다. 실제로 수업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은 시간을 투자하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는 것이지만, 교과 특성 고려하여 온라인 수업 환경에 맞게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것은 해당 교과의 전문성을 갖춘 개별 교사가 홀로 감당해야 할 몫이었기 때문이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수학습 평가지침에도 여러 가지의 변화가 있었다. 교육부의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교육부 보도자료, 2020.5.7.)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의 수행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온라인 수업의 장면에서는 평가를 할 수 없고 등교 수업 기간 중에도 가급적 이론 및 개별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학습자 중심에서 강조되어 오던 모둠형 수행평가를 지양하는 등의 지침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활발히 학교 수업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실천되어 오던 다양한 형태의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온라인 환경에서는 전면적으로 위축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변화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사회과에서 요구하는 성취기준과 핵심 성공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되었다. 교실 환경에서의 대면 수업을 온라인 환경에서의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업 장면의 전환을 넘어 온라인 수업 환경에 맞추어 수업을 설계하여 교수학습 활동을 실천하고 그 과정을 평가하는 교육 활동 전반에 걸친 보다 근본적이고 복잡한 문제이다.

이에 연구자가 실천한 한 학기 동안의 ‘정치와 법’ 과목의 수업 사례를 통해 교실에서의 대면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과 수업의 실천 과정에서 경험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변화한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법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탐색

### 1. 온라인 수업의 효과에 대한 연구

지식·정보화 사회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지닌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은 교육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았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기존의 지식 습득 형태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환경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e-learning의 급속한 확산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e-learning 학습 환경은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고, 교수자로부터 일방적인 지식을 제공 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게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준다(최정운,2016).

이러한 배경에서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온라인학습은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편의성, 네트워크를 통해 동료학습자나 전문가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연결성, 그리고 학습에 대한 접근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육 방법의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에 대한 접근성으로 인하여 자기주도적 학습(Warschauer&Meskill,2000:최원호,전영국,2020 재인용)이 가능하며 학습자의 능력에 맞게 개별화 수업 및 반복 학습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다(김정렬,2011).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습의 시간적 물리적 제약이 줄어들고 학습자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멀티미디어의 사용과 정보탐색 등을 통한 열린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라인 학습은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학습 정보와 수업 내용 및 이력의 기록 과 저장을 용이하게 하여 수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이경순·한승연·김재은, 2008). 대학교육 현장에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가 활성화 되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중등 교육에서도 온라인 환경에서의 교실 수업의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20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교육부는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제24조(수업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를 근거로 원격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운영 방식으로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그 밖에 교육감·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 등을 제시하였고, 학교 현장에서는 다음의 원격 수업의 유형을 기준으로 학교별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였다.

<표 2>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 형태

구 분	운영 형태
① 실시간 쌍방향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간 원격교육 기반(플랫폼)을 토대로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li> </ul>
②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콘텐츠로 학습하고,교사는 학습 진행도 확인 및 피드백</li> <li>(강의+활동형)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답글 등으로 원격 토론</li> </ul>
③ 과제 수행 중심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는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 및 피드백</li> </ul>
④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청,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li> </ul>

## 2. 온라인 환경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기술 등의 급속한 발달은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사회과에서도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학습이 중시되고 이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경험을 수업 시간에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강조되어 온라인 수업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면대면 및 온라인 토론 수업 비교연구(구정화,2005),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과 온라인 토론학습(이윤정2014), 온라인 공론장에서 의제 설정을 활용한 사회과 쟁점 중심 수업 모형 개발(모경환·안효익,2009)등의 연구와 같이 온라인 학습 환경의 특성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활동에서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온라인 학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블렌디드 러닝)**을 확산하겠다고 공식 발표 하였다.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은 일반적으로 e-learning을 통해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 방식이 가지고 있던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 및 상호작용성의 한계를 극복하려던 노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e-learning 교육방식에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방식이 갖고 있는 교육적 장점을 결합하고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설계 전략이다(최정운,2016). 즉 학생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오프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는 교사가 강의를 하고 온라인 학습 환경을 이용하여 학생에 대한 피드백, 보충, 심화 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전형적인 블렌디드 러닝을 통한 개별화 수업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Garrison et al,2004). 사회과 블렌디드 PBL수업 모형의 설계와 개발(박하나,2020), 초등학교 사회과 문제해결학습을 위한 블렌디드 Jigsaw 모형개발(이인자·이유나·이상수,2009), SNS를 활용한 사회과 블렌디드 러닝 모형 개발 연구(최윤주)를 통해 블렌디드 환경에서의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사회과 교육에서의 블렌디드 학습이 학업성취도 향상 뿐 아니라, 상호작용 증진, 그리고 만족도의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학교 교육의 역할 변화에 대한 실천적 논의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플립러닝은 전통적인 교수 방법의 패턴을 뒤집어 기존의 지식 습득 중심의 교실 수업을 교실 밖에서 실행하고 과

제로 수행되던 학습 활동을 교실 공간에서 실현한다. 플립러닝이 실행되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속도를 조절해가며 학습 과제와 관련 있는 강의를 가정에서 듣고,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교실에서는 관련 지식을 활용한 학습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Jeff,2011;박기범,2014 재인용). 플립러닝은 전통적 교실 수업보다 교사와 일대일의 대면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점, 본 수업 이전에 제공되는 사전 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기본 지식과 개념을 습득할 때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며 배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을 개별지도하는 것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완전 학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Katie Lepi,2012;박기범,2014 재인용).

법교육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교실에서의 대면 수업 환경을 기반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의 교수학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 학부 수업에서의 플립드(Flipped Learning)기법을 활용한 법교육 수업모델 연구(곽한영,2016),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권 침해사례를 중심으로 한 플립러닝 사회과 교수·학습방안에 대한 연구(배화순,2017)를 통해 법교육에서 온라인 수업환경을 병행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닌 의의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수업이 가진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 교과에서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은 교실 수업과는 별개로 단일한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수업모델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진 반면, 교실수업을 전제로 수립된 교육과정을 온라인 수업 환경 전환 설계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으로서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평가와 연계할 것인가, 나아가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수업의 환경에서 무엇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수업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역시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이 시행된 상황에서 ‘정치와 법’ 과목 수업을 실천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실에서의 대면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탐색하고,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수업 환경에서 한 학기의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법교육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사례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이 시행되면서 2020학년도 1학기 정치와 법 과목의 교실 수업을 온라인 수업과 블렌디드 러닝의 형태로 수업을 전환하여 실천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따라 I.(1). 민주정치와 헌법 단원에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하는 수업의 일부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정치와 법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50명이다. 수강 학생의 대부분은 해당 학기 이전에 정규 교육과정에서 온라인 수업의 경험이 없었으며, 있었다하더라도 교수자의 동영상 위주의 내용 전달형 수업이었으며 교실 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성격을 갖는 형태의 강의였다. 학생 대다수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찾아보거나 SNS를 통한 소통, 게임을 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인터넷 매체를 비교적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 활동 과제 및 수행평가를 위해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자료를 수집해 본 경험은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자료를 수집·분석·처리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과제를 수행한 경험은 없었으며,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탐구 활동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활동을 해 본 경험은 없었다. 따라서 온라인 등교 이후 온·오프라인 혼합형(블렌디드) 수업 환경에서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스스로 주제를 정하여 탐구 활동을 추진하여 동료와 함께 과제를 완성해 나가는 경험을 하는 활동에 대하여 기대를 가진 학생도 있었고, 반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는 활동에 대하여 귀찮고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한 학생도 있었다.

#### 2. 연구 도구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온라인 학습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성찰일지이다.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실시간 온라인 수업, 온라인에서의 작문 활동과 교실 수업에서의 토론 활동, 프로젝트활동의 각 단계마다 학생들에게 온라인, 오프라인

으로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각 차시별로 도움이 되었던 점, 불편이 있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점을 축으로 하여 그 이유에 대한 세부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과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다.

### 3. 자료 분석

성찰일지의 자료는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실시간 온라인 수업, 온라인에서의 작문활동, 프로젝트 활동의 영역으로 나누어, 온라인 환경에서 각각의 수업 활동이 가지는 효과와 한계, 그리고 보완할 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IV. 온라인 수업 전환에 따른 수업 설계

법교육의 목표는 법의 필요성, 기능, 이념과 원리 및 체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법적 쟁점들을 합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법이 부여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법학 지식을 전수하는 법학교육(Law Education)과 구분되는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은 법적 기초소양과 법적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곽한영,2006)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박성혁,1998:이철희,2002:이수화,2005:곽한영,2009:송성민,2007:배화순,2010).

그런데 면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은 의사소통 방식, 수업 환경 등에서 고유의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차이로 인해 면대면 수업에서 성공적으로 활용하던 교수 전략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는 기존 면대면 수업에 맞추어 설계된 수업 목표와 수업 내용, 교수 설계 전략, 활동, 평가 등의 요소를 온라인 학습 환경에 맞추어 재설계해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재설계된 온라인 수업에서도 기존의 면대면 수업을 설계할 당시 계획되었던 교육 과정상의 성취기준과 역량의 수준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적절한 방식으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선행 작업으로서 기존의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온라인 수업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개학이 발표되기 전 이미 1학기 교과 진도계획 및 수업 활동과 평가 계획을 설계한 상태였다. 1학기에는 (1)민주주의와 헌법, (2)민주 국가와 정부, (3)정치과정과 참여 단원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학기 단위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헌법을 중심으로 두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개학이 미루어지면서 전면적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되고, 나아가 온라인 수업과 교실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수업 시수 감축을 반영하여 학습량 적정화의 관점에서 교과 진도 계획과 성취 기준을 조정하였다.

<표 3> 2020학년도 1학기 정치와 법 교육과정 성취기준 재구성

단원	교육과정 성취기준
(1)민주주의와 헌법	[12정법01-01] 정치의 기능과 법의 이념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분석한다.
(3)정치과정과 참여	[12정법03-01] 민주 국가의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을 탐구한다.
(3)정치과정과 참여	[12정법03-03]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정치 주체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방법을 탐색한다.
(1)민주주의와 헌법	[12정법01-02] 헌법의 의의와 기능을 이해하고,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를 탐구한다.
(1)민주주의와 헌법	[12정법01-03]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2)민주국가와 정부	[12정법02-01]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를 이해하고, 우리 헌법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탐구한다.
(2)민주국가와 정부	[12정법02-02]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을 이해하고, 이들 간의 상호 관계를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분석한다.
(2)민주국가와 정부	[12정법02-03] 중앙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 자치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현실과 과제를 탐구한다.

정치와 법 교과는 민주주의 이념과 정치과정 및 제도, 우리 헌법의 이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정치적 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법교육과 관련해서는 법의 필요성 기능 이념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적 쟁점들을 합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법이 부여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사는 학생들이 법교육에서 요구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학습 환경의 특징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온라인 학습 환경은 다양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고 동료 학습자와 교수자 등 다른 사람과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탐구학습이 학습자의 자율적인 학습능력,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임병노, 2003; 최경임, 1999),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의 탐구학습은 학습자의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고 과제 수행을 위한 조직화 능력(정보수집능력, 정보활용능력, 정보조직능력)을 향상시킨다(강명희·한영선, 2000).

따라서 온라인 수업 활동에서는 강의 시간을 짧게 줄이고, 학생이 스스로 자료를 찾고 그 결과를 조직화하여 글쓰기 활동을 하는 등 능동적 탐구의 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면대면 교실 수업에서 개별 과제 수행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정리하는 형태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온라인 수업에서는 보통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50분 단위의 강의를 대폭 줄여 20분 내외로 구성하고 해당 차시 주제에 대한 글쓰기 등의 탐구 과제를 수행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출석 과제로 제시한 과제를 매 수업 종료 시점에 업로드하도록 하여 피드백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본교에서는 온라인 개학을 4월 16일에 하였지만, 학생들이 5월 20일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하게 되어 격주 등교 체제로 전환되었다. 1주 2단위의 수업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온라인 2차시 수업 중 1차시는 교사의 강의 수업과 활동 안내로, 2차시에는 학생의 탐구활동이 중심이 되도록 구성하고, 온라인 수업 후 등교수업에서는 개별 탐구 내용을 점검하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병행 격주 등교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된 교수·학습 계획의 일부이다.

<표 4> 온·오프라인 병행 격주 등교 환경에서의 수업 설계: 기본권 내용을 중심으로

□단원:1.(1).민주정치와 헌법  
 □성취기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차시	학습활동	평가방식	수업형태	교과역량
1	·온라인 강의: 기본권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온라인 수업	
2	·EBS다큐프라임‘악플수집가’영상을 시청하고 질문에 응답하기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하기		온라인 수업	
3	·친구들 과제를 공유하고 의견 나누기 ·혐오표현 규제법에 대한 토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글쓰기	포트폴리오	교실 수업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4	·강의: 사례 속에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참정권, 사회권, 청구권)분석하기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의견 나누기		교실수업	
5	·헌법재판 판례를 재구성한 사례를 분석하고 글쓰기	포트폴리오	온라인 수업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6	·친구의 글에 대한 상호피드백(댓글 달기) ·온라인 강의: 사례를 통해 기본권 제한과 요건과 한계 도출하기		온라인 수업	의사소통 능력

교육부의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에 계획한 프로젝트 활동에도 변화가 생겼다.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정치와 법 교과에서 강조하는 역량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생활 속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둠별 협업의 과정을 통해 법을 제정·개정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지침에 따라 모둠활동은 전면 수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함께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협업을 통해 산출물을 만들어 나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핵심

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모둠활동 없이 어떻게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을 경험하도록 설계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다. ZOOM, 구글 MEET 등을 활용하면 온라인상 모둠별 토론활동 수업을 구현할 수 있지만 학기 초에 모든 학생들이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대안으로 선택한 것은 개별 탐구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프로젝트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급 친구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과제를 완성해 나가는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었다. 개별 정책제안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급 친구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하며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협업의 과정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온·오프라인 병행 격주 등교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된 프로젝트 수업 계획의 일부이다.

<표 5> 온·오프라인 병행 격주 등교 환경에서의 수업 설계: 프로젝트활동 및 평가 계획

□단원:1.(1).민주정치와 헌법  
 □성취기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을 분석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차시	학습활동	평가방식	수업형태	교과역량
7	·프로젝트 ‘불편하다 말해도 괜찮아’ 안내하기 ·탐구 주제 정하기		교실수업	
8-9	·기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문제분석 활동지 작성하기 ·교사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과제 내용 수정하기 ·자신이 조사한 기본권 침해 사례와 근거 자료를 친구들에게 발표하기(3분 내외 영상제작) ·동료의 과제에 대하여 피드백 하기		온라인 수업	비판적사고력 문제해결력 정보활용능력 의사소통능력
10-11	·기본권 침해 분석 과제에 대한 의견 나누기 ·동료의 과제에 대하여 피드백 하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활동보고서 작성하기	포트폴리오	교실수업	
12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김해시 정책제안하기		온라인 수업	

수업과정에 변동이 생기면서 평가기준과 평가의 방식 역시 수정을 하게 되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격 수업 시 학생이 제출한 과제 의 수행 주제 및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평가 및 학생부에 기재 불가하며, 등교 수업 시 해당 과제물과 연계한 수업활동을 전개한 경우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내용은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 가능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학생 활동을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수업에서의 활동을 교실 수업과 연계하여 평가 계획을 설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따라서 평가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블렌디드 된 수업 장면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 V. 수업의 실천 과정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고 4주는 온라인 수업의 형태로 수업이 진행되었고 이후 5월20일부터는 온라인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수업이 진행되었다. 처음 마주하는 전면 온라인 수업 환경을 정비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문제점을 비롯하여 면대면 환경에서 적용되던 교수학습 방법을 온라인 환경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1.(1).민주정치와 헌법단원에서 기본권 내용의 수업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수업 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면대면 교실 수업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그 효과와 한계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격주 등교가 시작된 이후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수업 환경에서 사례학습을 통한 토론수업,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 1, 온라인 수업에의 적응 과정

온라인 수업 환경은 시·공간의 차이를 극복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자가 원하는 상황에서의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러한 온라인 수업환경이 가진 일반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온라인 수업의 효과와 한계를 학생들의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학기 온라인수업은 교사가 사전에 영상을 촬영하여 과제와 함께 제공하

는 콘텐츠 활용중심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하였고, 이후에 실시간 원격 플랫폼을 토대로 교사와 학생 간 화상 수업을 하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하였다. 수업 실천 결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과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형태의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의 평가가 다양하여 두 형태를 구분하여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 출결관리의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 예산으로 구매한 ‘리로스쿨’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전 교과목에 통일하여 운영하였다. 담당 교사가 과제방을 개설하면, 학생이 업로드 된 강의영상을 시청하고 함께 부과된 과제를 수행하여 해당 공간에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매 시간 과제 제출 결과에 따라 담당교사가 해당교사의 출결을 확인하고, 제출한 과제에 대한 평가를 댓글로 달아 한 차시 수업에 대하여 피드백 하였다.

한 차시 수업은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를 체크하고 학습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매 시간 간단한 과제를 부여하여 시간 내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때 50분 수업시간에서 영상 학습과 과제 수행 및 업로드 시간을 고려한 결과 수업 영상의 내용은 25분 내외로 줄였다. 수업 영상은 ‘아이캔노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녹화하였다. 이론 강의 영상을 촬영할 때는 PPT 내용을 중심으로 교실에서 판서하듯 주요 개념을 필기하였고, 수업 종료 후 PPT 및 노트 필기내용은 PDF파일의 형태로 다시 과제방에 업로드 해주었다.

교실에서의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환경에는 여러 차이점이 있겠지만, 온라인 수업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온라인 수업은 첫째, 언제든지 수업에 접근할 수 있고 이로써 반복적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큰 장점으로 작용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영상을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을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지금처럼 영상으로 올리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영상으로 할 때는 수업 내용 부분에서는 놓칠 걱정이 없어서 효율적입니다. 집중이 안될 때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스케줄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학습자의 능력에 맞게 개별화된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에서의 장점이 두드러졌다. 스무명 이상의 학생이 앉아 있는 교실환경의 물리적인 특성상 개별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사, 그리고 수업에 대한 이해도를 반영하여 수업

을 진행하기 어렵다. 물론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교사가 제공하는 수업 영상 역시 일방향적이지만 이해 속도가 다소 늦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 여러 번 반복학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업과 함께 제공되는 심화·보충 자료를 통해 자신의 학습 속도를 조절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 실제로 학생 간 실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업에서 정치와 법 고난도 기출문제를 잘 다루지 않는 편이지만, 온라인 수업을 제작하면서 고난도 문항 풀이를 따로 영상으로 제공하여 업로드 하고 있다.

“필기 내용을 PDF로 다운 받아서 내 필기 내용과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필기하는 속도가 늦고, 필기를 하면 수업을 잘 못 따라가서 놓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행동이 느린 나한테는 영상 수업이 더 좋은 것 같다.”

세 번째,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어 발표하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비대면이라는 환경의 특성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교사와 댓글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온라인으로 댓글로 물어보는게 더 쉽게 물어볼 수 있어서 좋다. 수업시간에는 질문을 하면 너무 눈에 띄어서 물어볼 수 있는 것도 못 물어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대면 온라인 환경의 장점은 다른 면에서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학습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는 온라인 수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관리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다음에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집중력이 더 떨어져요. 과제 수행기간이 일주일이니 까 미뤄뒀다가 대충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교실에서 수업하는게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물어볼 수 없는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온라인 수업은 면대면 수업에 비해 교사와 학습자 간의 거리가 멀다. 학생의 수업참여도와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대면 수업환경에서처럼 학생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영상 강의를 듣고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상을 시간 내에 듣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거나 과제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모습까지 교사가 통제하기는 힘들다. 면대면 교실수업 환경이라면 교사가 수업에의 참여를 독려하겠지만 온라인 환경에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학습 결손과 이로 인한 학습량

의 격차가 드러날 수 밖에 없다.

나아가 교실 수업에서 교사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뿐만 아니라 학생의 눈빛과 고개 끄덕임 등 비언어적 제스처를 관찰하여 수업의 이해도를 확인한다. 하지만 비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이해 정도를 즉각적으로 관찰하여 수업의 흐름과 난이도를 조정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의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어려움 역시 존재한다.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기간에 학생들은 과제방에 질문 댓글을 달고, 교사가 질문에 대한 댓글을 다시 피드백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이때 수업 시간 중에 댓글을 달면 그 시간 내에 응답을 하였지만, 교사가 댓글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실시간 비대면 수업이 정법 수업에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경우 영상은 그냥 보기만 하면 되지만 실시간으로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시간은 그래도 궁금증이 생기면 그 정법 시간 안에는 질문을 하면 선생님도 바로 해결 해주시니까요!

수업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였다. 사전에 구축한 정치와 법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실시간 수업 중에는 구글 MEET를 활용하여 학생이 교사와 닿아 있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교사-학생 간, 학생-학생 간 의견을 실시간으로 나눌 수 있어 생동감있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실시간 수업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음. 온라인 수업환경이지만 교실 대면 수업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불만도 표출되었다. 학생들이마다 온라인 수업 환경 격차가 심해 수업에 제때 접속하지 못한 학생도 있었고 수업 중간에 튕겨져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과정이 반복되어 분위기가 어수선해져서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실시간 수업을 하면서는 사전에 출석체크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학생들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초반부터 수업 다소 분위기가 흐트러

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에 해 오던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의 반복학습, 개인별 수준에 맞춘 자기주도적 학습에 매력을 느낀 학생들은 실시간 수업은 오히려 시·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온라인 수업의 장점을 오히려 살리지 못하는 방식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기존의 강의 영상 업로드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와이파이가 갑자기 끊긴다든지 다수의 이유로 화질이 안 좋아져 필기를 할 수 없게 된다거나, 갑자기 영상이 끊기거나 멈춰 수업을 놓친다거나, 소리 또한 끊기는 등 문제로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더욱 질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무엇보다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인 복습이 가능한 이점이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존의 강의 영상 업로드 방식이 더 좋습니다. 영상 방식은 여러 번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여러번 듣고 혼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이 공부이며 그렇게 공부한 내용이 진짜 제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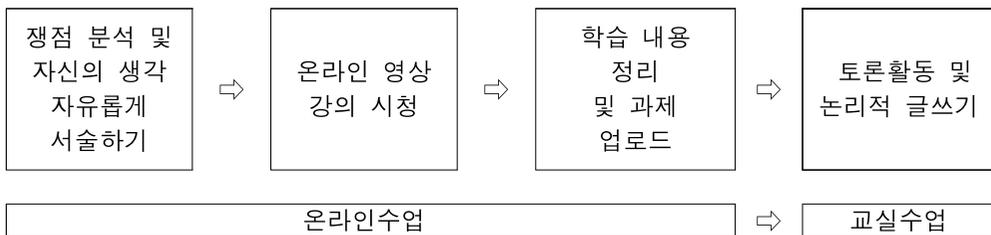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의 시도를 해보았고, 새로운 시도가 있을 때마다 수업의 내용과 온라인 수업의 형태에 대한 피드백을 학생들로부터 받았다. 그 결과 정치와 법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협점을 찾은 것은 온라인 수업 본래의 장점을 살려 강의는 영상으로 촬영하여 제공하기로 하되, 한 차시 수업 교사가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수업 장면은 실시간 원격 수업이되 강의 영상을 따로 제공하는 형태이다. 영상수업을 하는 중간에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질문과 응답의 과정을 통해 학생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였고, 실시간 채팅 기능을 활용하여 수업 중 궁금한 부분을 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의 형태에 따라 때로는 미리 촬영해둔 강의가 오히려 교사로 하여금 융통성 있게 수업을 컨트롤하는데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또한 실시간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업 영상을 따로 촬영할 시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교사의 수업 부담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을 운영할 때 실시간과 비실시간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 차시의 수업이 지향하는 목표와 그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교수·학습전략에 비추어 수업 형태의 적절성의 여부를 세심하게 설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 2. 온라인 수업에서의 쟁점중심 글쓰기 활동과 토론 활동으로의 연계

법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은 인권의 존중과 민주주의 정신을 내면화한 미래의 정치적 주권자를 길러내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이므로 헌법교육이 헌법적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헌법전(code of constitutional law)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김자영,2014). 학생들에게 헌법 관련 내용으로 단순히 정부 제도나 기능, 헌법 조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향유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이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이진석, 1994).

이러한 맥락에서 온라인 수업에서는 매 차시 수업시간에 다룰 내용과 기본권과 관련된 쟁점이 담긴 사례를 제시하고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자유롭게 활동지에 서술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실제 상황의 맥락에서 재구성한 사례를 통해 제시문 속에서 사실 관계를 분석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하여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고, 다음 차시 교실 수업에서 본격적인 토론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토론의 결과를 정리하며 논리적인 글쓰기 활동으로 마무리하였다.



[그림 1] 온라인 수업에서의 글쓰기 활동과 오프라인 교실 수업에서의 토론 활동의 연계

면대면 교실 수업에서도 글쓰기 활동을 매 시간 수행하지만,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의 작문 활동은 교실 수업에서의 활동과는 다른 효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교실 수업에서는 수업 시간이 50분으로 제한되어 있고, 학생들의 사고 수준 및 쓰기 능력의 편차가 커서 과제 수행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는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충분히 숙고하여 과제를 수행할 시간이 주어 진다는 점에서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껴 깊이 있게 생각하고 글을 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과제 제출 후 교사의 개별적인 피드백이 사

고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

“평소에 글쓰는 속도가 느린 편이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자신의 생각을 쓰라고 하면 그 시간에 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시간을 충분히 주니까 생각하고 글을 써서 과제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다. 생각도 정리가 되고 짧기는 해도 글을 완성하고 선생님 피드백을 받으니까 도움이 된다.”

“글을 쓸 때 용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말문이 막힐 때, 바로 자료를 찾아보고 내용을 검색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어디를 더 찾아야 내가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

나아가 온라인 수업에서의 글쓰기와 피드백 활동은 교실에서의 토론 활동을 보다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다. 토론 수업은 학생들의 참여부족, 토론 수행 능력 부족, 사전 조사 부족 등의 문제로 수업의 계획과 운영 과정에서 교사가 공을 들이는 것에 비해 충분한 학습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토론 활동에 앞서 온라인에서의 글쓰기와 그 공유의 과정을 연계하였을 때 토론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먼저 온라인 수업 활동에서 토론 활동 이전에 수업 시간에 다루어질 쟁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보는 과정은 충분히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갖는 점, 그리고 과제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으로 주장과 근거를 발전시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수업에 대한 흥미를 돋워 토론에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 수 있다. 활동을 진행하는 교사 역시 학생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적절한 시점에 개입하여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제 제출 시점에는 과제 열람 권한을 본인 글만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설정하였으나, 제출한 과제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이 마무리 된 다음에는 조회 및 댓글 권한을 학급 전체 학생으로 확대하여 쟁점에 대한 동료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의 입장을 토론활동 공유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이 토론활동을 더 활발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되었다. 아래는 혐오 표현 금지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의 입장을 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온라인 과제의 일부이다. 학생들은 과제 이후 친구들의 과제를 자유롭게 확인하고 사전에 댓글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 활동에 참여하였는데, 이때 각자가 생각하는 혐오 표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림 2] 혐오표현에 관한 과제 제출결과

또한 자신의 입장과 같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였기 때문에 느슨한 형태이지만 같은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학생들 간에 유대감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유대감은 토론 활동에서 자신이 의견을 제시 할 때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동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안정감을 갖게 해주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활동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온라인에서는 문자를 이용하여 소통하므로 타인과 자신에 대한 의견을 비교하거나 반박하고 검토하는 활동이 훨씬 용이하며 학습자가 다양하게 연결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의미있는 글쓰기 활동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창조적인 사고와 같은 고급 사고력이 발달하게 된다(Bonk and Reynolds,1996:구정화,2002). 온라인-등교수업을 병행하는 수업 환경에서의 토론 수업이 교사의 관찰과 통제 하에서 교실에서의 토론 수업과 연계하여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본격적인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토론 기술과 능력, 자료 준비과정을 배우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먼저 온라인 환경에서 글을 쓰는 것은 수업에서 발표를 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거부감이 적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교실에서는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의견도 글로 써서 출석 과제의 형태로 제출되어야 한다

는 점, 그리고 자신이 작성한 텍스트가 온라인 공간에 남아서 교사와 친구들로 하여금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 되어 오히려 토론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글쓰기 과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관심사와 흥미를 고려하여 학생의 참여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쓰기 활동과 의사소통의 과정을 평가하고자 할 때의 어려움이 있다. 온라인에서의 글쓰기 활동 대한 평가는 누적된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평가하였고, 이미 검증된 평가 척도를 재구성 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의 의견에 공감하고, 또는 비판적 시각으로 반박하는 등 온라인 수업에서 일어난 다양한 피드백 활동에 드러난 의사소통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을 절감하였지만, 평가 요소와 척도를 어떻게 적절하게 구성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만 남기고 평가로 이어나가지는 못하였다. 온라인 수업 장면에서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한 평가기준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3.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의 프로젝트 기반(Project based learning) 수업

정치와 법 과목에서 법 영역에서는 법적 쟁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보 활용능력과 법적 분쟁 해결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신장을 강조하며 창의적 사고를 통해 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교육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수업 활동을 통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을 적용하였다.

프로젝트 기반학습은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자들 상호간에 공동으로 문제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을 통해 공통의 해결안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방법을 말한다(Barrows,1985). 우리 지역에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를 찾아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우리 지역에 내가 만든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활동 과정에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경험, 교사와 동료의 피드백을 받으며 과제를 완성해가는 경험을 통해 의사소통능력과 사회 참여 능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학생들에게 다음의 가이드 자료를 제공하여 프로젝트를 안내하였다.

<표 6> 프로젝트 수업 ‘불편하다고 말해도 괜찮아’ 학생 가이드

차시	학습 목표/성취기준	활동 내용	
1	<p>시민의 참여가 살기 좋은 생활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필수적 요소임을 안다.</p> <p>내가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다.</p>	<p>· 활동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주민참여예산 제도</p> <p>· 도시에 대한 권리 세계 현장 전문 읽기</p> <p>· 도시에 관한 권리-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p> </div> <p>· 주제 선정하고, 주제에 대한 의견 나누기</p>	교실
2	<p>침해당한 권리가 무엇이며, 그 권리가 왜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p> <p>주장에 대한 객관적, 신뢰성을 갖춘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p>	<p>Q. 김해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 시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p> <p>· 기본권 침해 사례와 관련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있는 글로 표현한다.</p>	온라인
· 과제 및 질문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 (주제 적합성, 근거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 등)			
3	<p>자신이 연구한 성과물을 동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p>	<p>· 교사의 피드백을 받아 과제를 수정한 후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하여 친구들과 공유할 1-2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과제 제출방에 업로드 한다.</p>	온라인
4	<p>침해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p>	<p>Q.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정책입안자라면, 어떤 정책을 만들 것인가?</p> <p>· 현재 김해시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p> <p>· 내가 김해 시장이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p> <p>→ 활동지 작성 및 업로드 (학급 전체 공유)</p>	교실
5	<p>동료의 과제에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p>	<p>· 동료의 정책 제안에 대한 피드백 활동 (공개한 수행평가 기준에 비추어 피드백을 하도록 방향성을 제시/ 좋은 점, 바라는 점, 궁금한 점 3가지를 쓰도록 피드백의 틀 제시)</p> <p>· 피드백을 반영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보완하여 구체화하기</p>	
6	<p>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제안서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p>	<p>정책제안 보고서 최종마무리</p> <p>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우리 지역 정책제안하기</p>	온라인
· 결과물 공유하기: 사회과의 날 행사: 복도 영상 상영회, 정책 홍보 팸플릿 제작 대회			

## 1) 주제 선정 단계

수업 첫 시간에 주제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제시된 텍스트를 분석하여 시민의 참여가 살기 좋은 생활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임을 파악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하여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교실 수업에서 시민으로서 내가 우리 지역에게 요구하고 싶은 권리를 자유롭게 활동지에 적어보게 하였고, 이를 다음 차시 온라인 수업에 댓글로 올리도록 하였다. 이때 헌법상 명문화된 기본권이 아닌 자신의 언어로 풀어서 표현하도록 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친구들의 의견에 대하여 활발한 피드백이 오고갔다.

어디에서든지 와이파이에 연결된 권리, 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놀 권리, 안심하고 귀가할 권리, 우리 지역의 정책에 쉽게 접근할 권리, 자전거를 타고 도시를 누빌 권리, 등갓길에 더위를 피할 권리, 배리어프리 영화를 쉽게 접할 권리, 건전하게 놀 권리, 자유롭게 버스킹을 할 권리, 불법주차 차량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광공해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선거운동 소음에서 해방될 권리 등

## 2) 문제 상황 분석

온라인 수업 활동에서 자료 조사를 통해 자신이 분석할 문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우리 지역에서 시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조사하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에 대하여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동료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도록 하는 글쓰기과제를 제시하였다. 결과물은 과제방에 업로드하여 교사의 피드백을 받도록 하였다. 과제방은 일주일 동안 오픈하였고, 주장을 뒷받침 하는 근거 자료를 반드시 2가지 이상 첨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제목 [정치외교법B] 도와주세요ㅠㅠ... [비교] 🔍 🗨

평가(점수) 1차 0 , 최종 0 점 저장

특요: 0 표 글자수: 624자 댓글: 3건

저는 일단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저는 먼저 상정동이나 상방동이 걸 성폭행법 성추행법 등등 많은 사람들이 살고있습니다 학생같은 경우에 학원을 마치고 늦은새벽에 집을 가연가 아니면 야자를 마치고 집을 가야하는데 상정동에 상정중 상정초 사이에는 불빛이 없어서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진짜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상방동 골목길도요! 그래서 저는 1번째 가로등을 설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누가 있는지도 알고 예들들어 무슨일이 생겼으면 씨씨티비를 통해 그사람의 신상을 그래도 쉽게 파악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번째는 경찰분들이 제발 순찰 좀 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경찰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거는 알겠지만 진짜 완전 새벽 그럼에만 순찰 도시고 저녁에 돌고계시는거를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학원 마치고 집가는데 진짜 너무 무서워요 아니면 경찰들이 다 불수있는 씨씨티비를 설치해서 어떤일이 일어날까같은면 거기로 바로 출동이 편다던가 아니면 싸이렌소리 같은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두가지를 꼭 김해시청분들 아니면 김해에서 높은신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거 맞죠? .... 아니면 지적 해주셔여 ㅠㅠ...

댓글 쓰기(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댓글통계

전다현 2020-06-08 11:42 🗨 🗑  
 그러면 다른애들 의견도 물어보고 다른나라 사례도 검색서 해기하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서민경 2020-06-08 09:49 🗨 🗑  
 참, 김해 시청에가면 CCTV설치 지도도 한눈에 볼수 있어. 시청 홈페이지지도 적극 참고.)

[그림 3] 선정한 주제에 대한 피드백 과정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웹서핑을 통해 사진이나 통계자료, 신문 기사 등을 수집하였고, 직접 구글, 네이버 설문으로 직접 질문지를 제작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46명 응답

요약  
 필수 항목입니다

주거하는 지역 강제가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에 마련되어 있나요?

응답	응답수	비율
만족	14	30.4%
보통이다	5	10.9%
불만족	27	58.7%

■ 만족  
■ 보통이다  
■ 불만족

-부산시의 공익 유휴지는 이태원 골라스 등의 체계성이 높은 드라이브 이용해 경관을 만들기도 하고, 서울시의 공익 유휴지는 서울 공무원의 브이로그 등 브랜드로 관리하여 경관을 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김해시는 정보 전달의 체계화만 이용할 면. 지역의 홍보를 위한 주목성을 향상시켜야 대장은 미흡하다.  
 -민중의 공익 유휴지(민중)에 민중이민 총부시의 총부시는 약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구독자 2만 명과 총 조회수 10만회를 달성했다. 영상 콘텐츠는 이거 중추 시민이 미니드라이브 그렇게 사랑해서 4000여 명이(4000여 명이) 이런 총부 시민들도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한다.  
 2. 그로 인한 문제점, 강제가 다양한 문화는 김해 시민들  
 -김해시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김해시 유휴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에 중앙적인 이유는 김해 공익 유휴지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다. 유휴지의 다른(대체)를 통해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는 다른 문장의 문맥과 큰 영향을 끼쳤다. 김해시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미디어가 잘 모른다(고 답했다) 때문이다.  
 -마일 참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ㅠㅠ 그리고 제가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신청해서 보시(제 근거로 답했다고 볼 수 있는 설문 문항은 좀 더 좋을까요?

댓글 쓰기(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댓글통계

서민경 2020-06-28 14:10 🗨 🗑  
 주거가 잘 보되어서 행복들이 많은줄 ㅋㅋㅋㅋ

생이 자료지원을 받아볼은 것이 필수 ㅠㅠ 다음 기회를 기대해 함께 노력할 생이 생이  
 설문조사(가) 대상, 신뢰성을 가하면 표본집단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전체 모집단(김해시민)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을 구성하는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비율과 유색(응답률)은-난중으로 나누지 않는데 나누지 해나 그 군에 해당하는 표본으로 구성하면 좋겠다. 표본을 나눠서 표본 1000은 100이 된다. 이(이)도 그렇하고 수에서는 합동은 같다.  
 표본을 잘 구성하면 더 유용하다.

[그림 4] 주제 탐구를 위한 자료 수집·분석 피드백 과정

온라인 수업 환경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에 보다 최적화 되어있다. 교실 수업에서는 학생이 정보 수집하는 시점과 수집한 자료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시점 간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지만 온라인 수업은 그 간격을 단축시킨다.

교사가 학생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적합성, 신뢰성, 정확성 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면 학생들은 교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료를 보완하는 작업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직접 자료를 찾으면서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었고,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면 어떠한 자료들이 있고, 또 모든 자료들을 토대로 비교를 해가며 통계를 낼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피드백 댓글을 통해 어떤 자료가 부족하고 더 채워야 하는지 설명해주셔서 바로바로 깨달아 실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전예지)

온라인으로 수행평가를 할 때 직접 선생님이 피드백해주신 시청사이트와 여러 사이트들을 둘러보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있는지도 몰랐던 공공데이터 플랫폼에 대해 알게 되었고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뉴스기사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시청사이트와 공공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믿을 만한 곳에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올바른 정보수집 방법과 저작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다. (서수민)

학생들은 온라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능숙하나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의 측면에서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과제에 대한 피드백 과정에서 국가정보포털, 국가 기관 홈페이지, 시청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직접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함께 자료를 수집하였다. 학생들은 성찰지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통계에 대한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는 과정이 의미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 3)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과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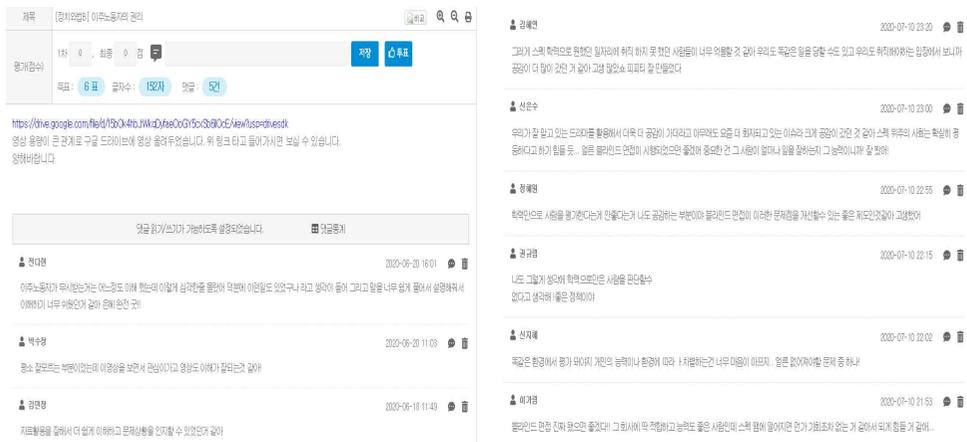
교실 수업에서는 동료들이 선정한 주제를 비슷한 성격으로 유목화하여 제시하고 수행과정에서 받은 피드백 역시 함께 공유하여 과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다. 친구들의 주장과 그 근거 자료의 적절성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개별 과제에 대하여 질의·응답 활동을 하였다.

친구들은 어떻게 과제를 해나가는지 지켜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잘하는 아이들이 수행평가를 하는 걸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도 얻었고 또 내 개인 과제인데 친구들이 도와주는 것 같아서 고마웠어요. 친구들의 칭찬이나 조언으로 과제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 보람있었고 어떤 조언을 해줘야할지도 배웠어요.

교실 수업과 온라인에서의 반응과 횃수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교실에서의 피드백은 정제되지 않은 말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주로 ‘잘했다’, ‘재미있다’ 등의 칭찬 위주의 단편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다. 동료의 칭찬으로 성취감을 느끼고 동기부여는 되었을지 모르나 친구들의 피드백이 내용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피드백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피드백을 줄 때 형식적인 요건을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였다.

친구들의 과제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 좋은 점, 궁금한 점, 바라는 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양질의 조언이 오고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5] 동료 피드백 활동

친구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보완하여 정책을 구체화 시켰고, 교실 수업에서 최종 정책 제안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문제 상황 분석과 정책을 제안하는 전 과정은 수행평가에 반영되었다.

#### 4) 결과물 공개하기

개별 프로젝트를 시행할 무렵 우리 지역에서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청소년이 제안한 정책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자신이 만든 정책을

스스로 제안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과의 날’ 행사에서 자신이 제안한 정책이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하여 정책 홍보지를 제작하여 게시하였고, 수업 중 제작한 영상은 전교생에게 공유하여 수업의 성과물이 평가 자료로만 활용되지 않고 모두에게 공유되어 경험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직접 정책을 만들기 위해 내가 사는 지역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활동이 의미 있었어요. 저는 버스킹을 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조사했고, 관련 법을 조사하고 우리 지역에 법안을 만들어보았어요. 이번 수행평가로 인해 문화기획 쪽으로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어서 관련 학과 진학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평가를 위한 영상들을 제작해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앞으로 장래에 대해 또다른 배움과 경험을 얻은 것 같아서 좋았어요. 중간에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으면서 말로 듣는 것보다 글로 받으니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친구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해보면서 발표는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30여명 정도의 영상을 보러니 막막하고 실시간으로 발표를 듣는 것보다 집중이 안 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온라인 학습 환경은 학습자가 주인이 되는 자율적인 학습 환경이며 다양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고 동료학습자와 교수자 등 다른 사람과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학습자의 자율적인 학습 능력,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다(최경임,1999;Bonk&Dennen,1999).

하지만 학습자의 문제해결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적으로 학생의 사고과정, 행동 등 비언어적 제스처 등을 관찰할 수 없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면대면 수업에서 교사는 수업 활동에서 학생이 자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제공하면서, 한발 물러서 있지만 끊임없이 관찰하고 비언어적으로 개입을 한다. 반면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는 학생이 언어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교사는 도움을 제공할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습의 안내자, 설계자, 촉진자로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의 질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프로젝트 기반학습에서 설계된 교과역량을 효과적으로 수업 활동 속에 녹여내고, 그 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 역시 남은 과제이다. 예를 들면 온라인 수업활동에서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을 신장 시킬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구성한다고 하자. 이때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여 긴밀

한 협업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설계해야하고, 수업 활동 중에 소통을 촉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가 해당 역량의 성장 과정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VI. 요약 및 제언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은 학교의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유례없던 온라인 개학의 충격으로 인한 혼란도 잠시, 어느덧 온라인 수업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평온한 일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갑작스럽게 시행된 상황에서 면대면 교실 수업을 전제로 설계한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탐색하고,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수업이 이루어지는 수업 환경에서 블렌디드 러닝의 형태로 한 학기 수업을 설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통해 법교육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전환한다는 것은 면대면 수업에 맞추어 설계된 수업 목표, 수업내용, 교수·학습전략, 평가 등 수업의 전 과정을 온라인 학습 환경에 맞게 재설계 하는 활동이다. 이때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도 법교육에서의 성취기준 및 교과 역량이 달성될 수 있는 교수학습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교육은 법학 지식을 전수하는 법학 교육과 달리 법적 쟁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쟁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과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을 수업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온라인 학습 환경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활용한다면 온라인 학습 환경은 오히려 교실 수업보다 학생들의 탐구 활동에 보다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실시간,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의 형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수업 환경이 더이상 낯선 것이 아니게 되었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수업이 요구되고 이미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IT기술을 어린 시절부터 능숙하게 활용해오던 세대이므로 학생들에게는 수업 테크놀로지를 경험하는 것

도 하나의 재미이고,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경험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지적 성취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다.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수업 환경에서의 블렌디드 러닝 수업은 전면 교실수업과 전면 온라인 수업을 양 축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면대면 수업 환경을 전제로 연구된 사례연구법, 모의법정 등의 다양한 법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이 새로운 블렌디드 환경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진화해 나갈 수 있을지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본 연구가 하나의 수업 실천 사례로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들에게 설계 자원으로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지금 우리가 겪은 시행착오가 한 발 더 내딛기 위한 도약의 한 걸음이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곽한영(2016). 플립드러닝(Flipped Learning) 기법을 활용한 법교육 수업모델 연구. 법교육연구, 11(1), 43-71.
- 구정화(2002). 사회과 논쟁문제에 대한 웹 기반 토론수업의 효과 연구. 시민교육연구, 34(1), 1-23.
- 구정화(2005). 초등 사회과의 면대면 및 온라인 토론 수업 비교 연구. 시민교육연구, 37(2), 1-34.
- 김경은·김현경(2013). 사회과 '법만들기 활동'수업의 효과 분석:법의식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52(3), 19-30.
- 김병노(2003). 온라인 탐구환경에서의 학습경험: 효과적인 탐구학습 설계를 위한 시사. 교육공학연구, 19(3), 69-99.
- 김주영(2005). 토론학습을 위한 블렌디드-러닝 수업 모형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재우(2020). 면대면 수업의 온라인 수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장애물에 대한 탐색. 교육문화연구, 26(2), 15~173.
- 박성혁(1998). 사회과교육에서의 법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26(1), 57-70.
- 박하나(2020). 사회과 블렌디드 PBL 수업모형 설계와 개발-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제 수업의 구상. 시민교육연구, 5(2), 19-227.
- 송성민(2007). 준법의식 유형에 따른 문제중심학습(PBL)의 효과에 관한 연구-노동법 수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화(2005). 사회과 법 교육에 있어서 사례연구법의 효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수(200). 면대면 학습 환경과 온라인 실시간/비실시간 학습 환경에서의 상호작용 패턴 분석. 교육공학연구, 20(1), 63-88.
- 이철희(2002). 판례(사례)중심 법 교육이 고급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자·이유나·이상수. (2009). 초등학교 사회과 문제해결학습을 위한 블렌디드 Jigsaw 모형 개발. 교육방법연구, 21(2), 163-187.
- 이윤정(2014). 학습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사회과 온라인 토론학습 전략. 사회과교육, 53(1), 143-162.
- 최미나(2013). 동일 교수자의 동일 수업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 환경에 따른 학습 효과 분석.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9(4), 5-23.
- 최원호·전영국(2020). 비대면 온라인 수업 사례 고찰: 동영상 녹화 및 실시간 화상 수

업 중심으로. 현장수업연구, 1(2), 1~28.

교육부(202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교육부(2020).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탄력적 학사 운영 및 원격수업 도입.

교육부(2020).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

#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New Normal)을 위한 경험적 연구

- 한양대, 숙명여대, 대구대, 서울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 \*\*\*

윤성현(한양대학교 교수)

## 목 차

- I.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후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New Normal)을 찾아서
- II. 「학부 헌법과목 수강 및 헌법판례교육에 관한 설문조사」 시행 개요 및 연구설계 취지
  1. 설문조사 시행개요
  2. 학부 그룹 구분(A-D)과 그룹별 비교를 통한 연구설계
  3. 설문조사 질문 구성 원칙과 개요
- III. 한양대, 숙명여대, 대구대, 서울대 4개 대학 학부생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1. 헌법과목 수강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1-5번 질문과 결과 및 분석
  2. 헌법판례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6-15번 질문과 결과에 대한 분석
- IV.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 교육목표에 따른 다양화·개별화 및 융합교육 강화
  1. 법전문원 도입 이후 법학 및 법교육 체계 전반의 개혁과 통합적 논의
  2. 법전문원 도입 이후 학부 법학교육 형태의 변화 양상과 헌법판례의 중요성
  3. 미국 학사과정 헌법(판례)교육으로부터의 시사점: 버클리, 애머스트를 중심으로
- V 결론

\* 본 발표문은 각자 담당하는 헌법수업에서의 설문조사를 흔쾌히 응해주시고 전문가로서 도움 말씀을 주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문식 교수님, 정광현 교수님, 숙명여대 법과대학 유은정 교수님, 기초교양학부 정애령 초빙교수님, 그리고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김수용 교수님, 서울대 사회교육과 김경래 조교님과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한양대, 숙명여대, 대구대, 서울대(이상 응답자 순)에서 개설된 8개 헌법 과목 수강생 중 161명 응답자들의 기여에 힘입은 바가 큼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설문조사 시행과 도표화 등 실무를 도와준 한양대 정책학과 박사과정 최경원 연구조교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 발표문은 아직 미완의 초고이므로 인용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I.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후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New Normal)을 찾아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문’으로 약칭) 체제의 도입은 기존 사법시험 체제의 법학교육과 전 대학의 고시학원화 등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지만, 변화의 진폭이 큰 데 비해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법전문 체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개선 논의라도 활발한 반면, 오늘날 쇠락한 학부 법학교육의 문제는 문제제기도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뿐이고, 본격적인 논의도 많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발표자는 전문교육으로서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법전문 체제가 된 지금에도 학부에서의 법학 혹은 법교육은 여전히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입헌민주주의의 발전을 외치는 지금에도 세계 도처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이 입헌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법학 또는 법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고, 이는 학부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sup>1)</sup>

법전문 체제의 도입은 기존 법학교육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지만, 법전문 자체의 교육 문제와 더불어 학부에서의 법학 혹은 법교육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발표자는 발표자의 전공분야이자 이러한 법학 혹은 법교육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관통하는 대표적인 분야로서 헌법교육을 다루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헌법교육 중에서도 다소간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은 헌법판례교육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주된 글감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발표자는 학부에서의 헌법교육을 그 목적과 성격에 따라 1) 융합교육 내지 학제간 교육으로서의 법학전문교육 2) 법과대학(혹은 학부)에서의 일반법학 전문교육 3) 사회교육과의 시민교육 4) 교양교육으로 구분하고, 위와 같은 성격 구분에 대략 상응하는 한양대, 숙명여대, 대구대, 서울대 4개 대학의 8개 학부 헌법 과목 수강생들에 대해 구글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학부 헌법 학생들의 헌법판례교육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발표자 및

1) 윤성현, “학부법학교육의 미래”에 관한 토론문,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20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연구 학술대회, 2015.9.4., 202-203면 참조.

담당 교강사의 분석과 미국의 예 등을 참고하여 법전원 시대의 변화에 상응하는 뉴노멀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학술대회의 제목과 같이 코로나가 제기하는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도,<sup>2)</sup> 또한 인공지능 혹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도 복합적으로 뉴노멀의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sup>3)</sup>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법전원의 도입이 가장 시급하고 선결적인 환경의 변화로 보이고, 이것이 학부 법학 혹은 법교육의 공동화(空洞化) 내지 다변화의 문제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으로 보아 본 연구를 기획하였다.

## Ⅱ. 「학부 헌법과목 수강 및 헌법판례교육에 관한 설문조사」 시행 개요 및 연구설계 취지

### 1. 설문조사 시행개요

본 설문조사는 학부 헌법과목 수강 및 헌법판례교육 설문조사를 통해 헌법판례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조사하여 향후 학부 헌법교육 및 헌법판례교육을 위한 실증자료로 삼기 위해 지난 2020. 11.16(월)부터 19(목)까지 4일 동안 구글 설문지를 통해 시행하였다.<sup>4)</sup>

설문조사를 시행한 4개 대학 8개 과목 수업 개요는 아래와 같다. 대구대와 서울대의 사회교육과 수업의 경우에는 각각 1학기에 헌법전공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서 지난 학기 헌법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소급하여 조사한 관계로, 현재 개설 중인 과목보다는 참여도가 다소 부진한 면이 있었다. 그 외의 6과목은 모두 2학기 현재 개설되어 진행 중인 과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코로나 시대의 법교육에 대해서는 본 학술대회 1, 2발표 참조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영록,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학부 법학교육은 어디로?”, 법학논총, 2017.12

4) 공지 과정에서 수업별로 다소 편차가 있어서 이보다 적은 기간이 부여된 과목들이 일부 있었으나, 기간 문제가 응답률에 큰 차이를 가져온 원인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구글 설문지는 과목별로 8개의 별도의 링크를 만들어 응답하도록 하여 혼선이 없도록 했다.

&lt;표 1&gt; 대학별 헌법강좌정보

대학교 개설단위	교과목명	교과 구분	학기	담당 교수	소속	수강 인원	응 답 인원
대구대 일반사회교 육과	법과사회	전공필 수	3학년1 학기	김수용	대구대 일반사회교 육과	30	15
서울대 사회교육과	시민교육과 헌법	전공필 수	2학년1 학기	이수진	서울대 사회교육과	26	6
숙명여대 법과대학	헌법소송법	전공선 택	2학년2 학기	유은정	숙명여대 법과대학	28	12
숙명여대 법과대학	미디어법	전공선 택	3학년2 학기	정애령	숙명여대 기초교양학 부	48	13
숙명여대 기초교양학 부	사랑과헌법	교양	학년 제한없 음	정애령	숙명여대 기초교양학 부	165	39 <sup>5)</sup>
한양대 정책학과	헌법과기본 권	전공필 수	1학년2 학기	윤성현	한양대 정책학과	58	28 <sup>6)</sup>
한양대 행정학과	헌법과기본 권	전공필 수	1학년2 학기	정문식	한양대 법학전문대 학원	61	32
한양대 창의융합교 육원	헌법의이해 <sup>7)</sup>	교양	학년 제한없 음	정광현 서기석	한양대 법학전문대 학원	58	16

## 2. 학부 그룹 구분(A-D)과 그룹별 비교를 통한 연구설계

연구자는 기왕에 학부 헌법교육에 관한 논문을 통해 법전원 시대 학부 헌법교육의 목표로 시민교육과 광의의 전문교육을 설정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sup>8)</sup> 본 연구에서도 크게는 이 기초를 유지하되,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5) 날짜가 지난 후에 1개가 더 도착했는데, 날짜 내에 도착한 39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6) 날짜가 지난 후에 1개가 더 도착했는데, 날짜 내에 도착한 28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7) 한양대 교양 ‘헌법의 이해’ 수업은 헌법과목을 전공으로 들을 수 있는 정책학과 학생은 수강제한이 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수강제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 수업은 정광현 교수님이 전반부에 녹화강의를 진행하고, 후반부는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서기석 석좌교수님이 실시간으로 관례세미나로 진행되는 옴니버스 강좌로 운영되고 있다.

8) 윤성현,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의 학부 헌법교육 정상화를 위한 시론- 시민교육과 광의의 전문교육의 투트랙(two-track) 교육방안 -”, 법교육연구, 2014.8.

살펴보고자 한다.

크게 보아 아래의 4가지 그룹을 염두에 두고 4개 대학 8개 수업의 표본을 모 집했다.<sup>9)</sup> 그룹A: 법전원 설치대학의 비법학과로서 법학을 포함한 융합전공형태 학과인 한양대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와 정책과학대학 행정학과의 헌법전공수 업,<sup>10)</sup> 그룹B: 법전원 미설치대학으로서 기존의 법과대학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숙명여대 법과대학의 헌법전공수업(헌법소송법, 미디어법), 그룹C: 시민교육의 보루로서 사범대에서 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 사회교육과와 대구대 사 회교육과의 헌법전공수업, 그룹D: 마지막으로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한양대와 숙 명여대의 헌법 교양수업으로 크게 구분했다.<sup>11)</sup>

<표 2> 학부 법학교육 및 법교육의 성격구분 및 표본 학과분류

구분	학부 법학교육 성격 구분	표본 학과의 수업
그룹A	법전원 설치대학 비법학과 법학전공	한양대 정책학과/행정학과 헌법과기본권
그룹B	법전원 미설치대학 법학부 법학전공	숙명여대 법학과 헌법소송법, 미디어법
그룹C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법교육전공	대구대 일반사회교육과 법과 사회, 서울대 사회교육과 시민 교육과 헌법
그룹D	교양과목으로서의 헌법	숙명여대 사랑과 헌법, 한양대 헌법의 이해

9) 발표자는 법과대학 체제에서 학생으로서 교육을 받았고 로스쿨 체제 도입의 원년인 2009년부터 시간강사로부터 시작해 다양한 강의를 경험해보았는데, 교양과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3가지 그룹의 헌법강의를 모두 해보았고(한양대 정책학과, 한양대 법학과, 서울대 사회교육과 등등),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강의도 해보았으며(건국대 법전원), 연구년 동안 미국 버클리 로스쿨 헌법 과목을 2학기에 걸쳐 청강하면서 미국의 교육방식을 경험하여 상당히 다양한 헌법 교육 환경을 경험하면서 지금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바 크다.

10) 다만, 엄밀하게 보면 정책학과는 PPEL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법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학생들도 법전원 진학 비율이 높은 pre-law의 성격도 가진 학과인데 반해, 행정학과는 행정학을 중심으로 하고 법학은 헌법과 행정법을 두고 있는데 그치고 법전원 등 법학관련 진로비율도 높지 않아 구별되는 것은 사실이다(행정학과는 구체적으로는 개별전문법학교육을 하는 학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두 학과 모두 정책과학대학 소속으로 되어 있어 학생들의 교류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헌법과기본권은 양 학과에서 공히 헌법기초필수과목으로 1학년 2학기에 듣는 과목이므로 본 설문조사에서는 편의상 한 그룹으로 설정하였다.

11) 다만 여기에 정치외교학과나 (경찰)행정학과 등을 중심으로 특정한 법분야의 전문적, 개별적 법수요에 부응해 이루어지는 단과대학별 전문법학교육을 추가할 수 있겠다. 진종익, “학부 법학교육의 미래” 법교육연구 논문 등 참조.

그룹A는 법학교육을 융합적, 학제적인 차원에서 전문으로 가르치고, 그룹B는 법학교육만을 전문으로 하는 단과대학이라는 점에서 구분되기는 하지만 A와 B를 합쳐서 전문교육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룹 C는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으로 초중등 교사 양성에 1차적 임무가 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시민교육의 그룹으로, 그리고 D는 교양과목이라는 점에서 역시 시민교육의 성격을 띠는다고 보아, C와 D를 합쳐서 시민교육의 범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들 A-D의 4개 그룹 중에서 A, B(전문교육) vs C, D(시민교육) 2개의 그룹 간에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 또한 A, B 사이에서 혹은 C, D 사이에서 내적으로도 각각 개별적 차이나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지를 보고, 이러한 비교에 기반하여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 3. 설문조사 질문 구성 원칙과 개요

발표자는 본 설문조사의 설문지를 학부 헌법판례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거의 망라하여 폭넓게 구성해보려고 노력했다(1-15번, 연계 문제를 포함하면 총 20-21문항, 주관식 설문 2개). 그리고 발표자가 위에서 이론적으로 구분한 학부 법학교육의 형태에 따라서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는지를 학생들의 설문 응답에 따라 경험적,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질문 자체가 특정한 결과로 이어지거나 혹은 선택지가 한정됨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진정한 의사가 정확하게 조사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발표자가 생각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자 했고, 그래서 객관식 설문이라도 답항의 마지막에는 ‘기타( )’ 항목을 두어 주관식으로 별도의 답을 적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객관식 질문은 1개의 답만 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중복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한 일부 경우(예컨대 헌법과목을 전공과목으로 들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도 원하는 경우) 정성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들이 일부 있다.

연구가 완결된 상태에서 질문지를 사후에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연구방향을 거시적으로만 염두에 두고 설문지를 발표문 작성보다 사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사후에 연구방향과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설문지에 미처 담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 또 설문지가 구글 폼을 이용한 비대면 응답 방식이고, 설문에 대한 사전 오리엔테이션 등이 이뤄지지 않는 탓으로,<sup>12)</sup> 응답자가 설문의 의도

를 정확히 이해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응답의 경우는 긴 설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성실하게 응답해준 것으로 보인다.

<표 3> 그룹별 설문 참여자 수(단위 : 명, %)

구분	대학 및 강좌명	대학 및 강좌명	개수	비율
그룹A	한양대 헌법과기본권(정책)	한양대 헌법과기본권(행정)	60	37.3%
그룹B	숙명여대 헌법소송법	숙명여대 미디어법	25	15.5%
그룹C	대구대 법과 사회	서울대 시민 교육과 헌법	21	13.0%
그룹D	숙명여대 사랑과 헌법	한양대 헌법의 이해	55	34.2%
합계			161	100%

질문 1-5번은, 위 설문조사 취지에 따라 학생의 소속을 묻고, 그 학생 소속에 따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헌법과목을 듣는지가 어느 정도 구분되는지를 묻고자 한 것이었고, 또 고학년이거나 헌법을 여러 과목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은 학생의 경우 앞으로 헌법판례교육에 대한 견해가 그렇지 못한 학생들과 구분될 것인지 등을 염두에 두고 물은 것이다.

질문 6-15는 헌법판례교육이 현재 각급 대학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를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또한 학생들이 바라는 헌법판례교육의 적절한 모습은 어떠한가를 1차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구성된 설문을 통해서, 1. A, B(전문교육) vs C, D(시민교육), 나아가 A-D의 4개 그룹의 설문 결과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보고자 했다. 단, 몇몇 문항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각자 인식하는 바와 교강사가 인식 또는 판단하는 바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각 설문결과를 해당 교강사와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교강사의 해석과 의견을 따로 물어서, 양자의 편차를 인식하고 필요하면 이를 수정, 보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 헌법수업을 통해서 헌법판례를 어느 정도의 분량과 어느 정도의 깊이로 접하고 있는지(설문 -번), 그리고 지금 수준의 헌법판례교육의 비중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해 물었고, 또 헌법판례를 공부하는 자료는 무엇이고 어떤 자료에서 효용성을 크게 느끼는지, 만일 이해가 어려웠다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헌법판례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

12) 다만 최대한 오독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료 교수님들과 연구조교에게 검토를 의뢰했다.

어질 수 있는 수업형태와 시험형태를 묻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리고 객관식 마지막으로는 헌법판례가 융합교육과 자유전공 등의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다른 분야와의 어떤 전공과 연계, 결합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14번). 발표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쟁점 혹은 객관식 설문으로 묻는 것은 한계가 있는 점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주관식 설문을 마지막으로 배치하였다(15번)<sup>13)</sup>.

### Ⅲ. 한양대, 숙명여대, 대구대, 서울대 4개 대학 학부생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 1. 헌법과목 수강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1-5번 질문과 결과 및 분석

1. 귀하는 현재 학부에 몇 학기 째 재학 중인가요?<sup>14)</sup>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총 합계
①1학기	1				1
②2학기	42			36	78
④4학기	8	1	3	8	20
⑤5학기	1	1		1	3
⑥6학기	4	9	16	4	33
⑦7학기	2	8	2	1	13
⑧8학기	2	6		3	11
⑨9학기이상				2	2
총 합계	60	25	21	55	161

2. 귀하의 학부 소속은 어디인가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법학		19		3	22
②융복합학과로서 정책학과(한양대)	29			1	30

13) 다만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 이것을 일종의 강의평가와 혼동하거나 혹은 그러한 기회로 생각하여 평소의 불만이나 건의사항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극소수 있었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14) 교양은 수강학년 제한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숙명여대의 경우 1학년이 먼저 수강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1학년생들의 수강비율이 매우 높다고 한다. 그룹D에서 1학년 2학기 많은 이유이다.

③사범대 (일반)사회교육			20		20
④(경찰)행정학과	19				19
⑤정치외교학과	1			1	2
⑥기타 사회과학	2	3		11	16
⑦인문	3	2	1	7	13
⑧경영	1			2	3
⑨경제	1			2	3
⑩공학				10	10
⑪자연계, 의약학				10	10
기타	4	1		8	13
<b>총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3. 현재 수강중인 헌법과목 외에 과거에 수강하였거나 현재 동시에 수강하고 있는 다른 헌법과목들이 있나요? 있다면 총 몇 과목을 수강하였거나 하고 있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없다	42	2	5	38	87
②1과목	14	6	8	11	39
③2과목	4	7	5	5	21
④3과목		8	2		10
⑤4과목		2	1	1	4
<b>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그룹A가 생각보다 헌법과목 수강과목 수가 적은 이유는 거의 대부분 1학년 2학기 전공필수 과목으로 듣고 있어서, 헌법과목을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수강하기 때문이며, 법학분야에 관심있는 정책학과 학생들의 경우는 대개 졸업시까지 2-3과목 듣는 경우가 많다. 그룹C의 사범대 학생들은 학과에서는 헌법 전공과목은 1개만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여러 과목을 들은 것은 주목할 만 한데, 법학과 수업이나(대구대의 경우) 교양수업(서울대의 경우)을 들은 것으로 추정된다.<sup>15)</sup>

15) 담당교수님께 확인 필요한 부분

## 4. 현재 수강중인 헌법과목을 수강 신청하게 된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졸업을 위한 전공과목 이수	44	10	10	2	66
②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대비	11	11		4	26
③공무원시험 대비	2			5	7
④공기업 등 입사시험 대비				1	1
⑤사회과 교사 임용시험 대비			8		8
⑥시민으로서의 교양 함양	3	3	1	38	45
기타		1	2	4	7
무응답				1	1
<b>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그룹A, B는 ①졸업을 위한 전공과목 이수와 ②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대비 목적이 그룹C, D에 비해서 현저히 높는데, 특히 실질 비율로 따지면 그룹A 중에서도 한양대 정책학과의 경우와 숙명여대 법학과 학생들의 경우 양자 모두를 목적으로 삼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sup>16)</sup> 그룹C의 경우에도 ①졸업을 위한 전공과목 이수 ⑤사회과 교사 임용시험 대비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룹D는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아무래도 ⑥시민으로서의 교양 함양을 위한 목적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 5. 헌법과목을 수강 신청할 때 가장 중점을 두어 배우기를 기대하는 내용은 다음 중 무엇인가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헌정사, 헌법철학, 헌법사상 등	3	1		1	5
②헌법이론	10	1	4	9	24
③헌법판례	32	11	4	11	58
④헌법과 부속법령		1		4	5
⑤헌법재판		1		1	2
⑥외국과의 비교헌법	1				1
⑦정치/사회 현상에 대한 헌법학적 분석 및 평가	6	3	5	6	20

16) 이는 숙명여대 유은정, 정애령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었다.

⑧ 전반적으로 고루	8	6	8	23	45
무응답		1			1
<b>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그룹A, B는 헌법판례 공부에 대한 수요가 높은 반면, 그룹C, D는 상대적으로 판례의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법학과목을 전공과목으로 배우고 있는가, 본인들의 법학 관련 진로와 연관지어서 소용이 있다고 판단하는가 및 담당 교수들이 판례에 더 비중을 두어 가르치는가와 연결된다고 보인다.<sup>17)</sup>

## 2. 헌법판례교육에 대한 설문조사 6-15번 질문과 결과에 대한 분석

6번부터 15번까지의 설문은 헌법판례교육에 대한 구체적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1-5번은 각각 1개의 문항으로 구성한데 반해, 6-15번은 연관된 질문의 경우 6-1, 6-2와 같이 구분하여 질문하였으므로, 실제 문항 수는 10개보다 5-6개 더 많은 15~16개였다.

6-1. 현재 수강중인 헌법과목에서 헌법재판소 결정(혹은 헌법적 판단을 포함한 법원 판결)은 3학점 수업 기준으로 1주에 몇 개나 다루어지고 있나요?(2시간 수업인 경우 3시간 수업으로 환산하여 답할 것)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 다루지 않는다			1	2	3
② 1~2개	7	8	13	26	54
③ 3~4개	13	9	4	22	48
④ 5~6개	13	7	1	3	24
⑤ 7개 이상	27	1		1	29
기타			1		1
무응답			1	1	2
<b>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17) 한양대 및 숙명여대 교수님들도 같은 의견이었다. 정문식 교수님은 기본권 수업이기 때문에 판례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양적으로 얼마나 다루고 있는가를 묻은 질문에 대해서, 그룹A, B가 상대적으로 그룹 C, D에 비해서 더 많은 판례를 다루고 있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의 수요 측면에서 법전원 진학 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전공으로서의 헌법과목들에서 더 판례의 비중이 높고, 교양이나 임용고시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더 비중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sup>18)</sup>

그룹A, B 중에서는 그룹A에서 다루는 판례 비중이 더 높다고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 교수님들께 확인한 바에 따르면이라도 이는 같았다. 또한, 한양대 수업은 기본권 수업이므로 판례를 많이 다루게 되는 수업이라는 점, 미디어법의 경우 헌법심화과목이고 판례 외에도 언론관련 다른 쟁점들을 다루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된 점도 고려해 볼 수 있다.<sup>19)</sup> 그룹C, D 중에서 교양과목인 그룹 D가 판례를 더 많이 다루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한양대 교양 헌법 수업이 판례를 강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sup>20)</sup>

6-2. 현재 수강중인 헌법과목에서 헌법재판소 결정(혹은 헌법적 판단을 포함한 법원 판결)은 3학점 수업 기준으로 1주에 몇 개를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2시간 수업인 경우 3시간 수업으로 환산하여 답할 것)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②1~2개	9	11	12	31	63
③3~4개	20	10	4	17	51
④5~6개	12	3	1	6	22
⑤7개 이상	19	1	2	1	23
기타			1		1
무응답			1		1
<b>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18) 김수용 교수님도 임용시험과 수업시간 등의 한계로 인하여 수업에서 헌법판례를 많이 다룰 수 없는 점을 언급하였다.

19) 발표자와 정문식 교수님은 7개 이상, 숙명여대 헌법소송법은 5-6개, 미디어법은 3-4개 정도로 말씀하셨다.

20) 한양대 교양에서 정광현 교수님은 5-6개 정도 하는 것 같다고 한 데 반해, 정애령 교수님은 1-2개 정도를 다루는 것 같다고 하였다. 정애령 교수님은 교양 사랑과 헌법은 헌법을 기초로 출발하지만 민법, 형법 혹은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므로 현재판례의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다고 언급하였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인식한 헌재 결정의 숫자에 비해서(6-1), 학생들이 원하는 헌재 결정의 숫자는 더 적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6-2, 그룹 A, B C, D 모두 그러함). 이는 아래 다른 문항들의 답변을 통해 보면 헌법 판례의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공부 양이나 부담의 측면에서 그러한 것으로 추정된다.

7-1. 현재 수강중인 헌법과목에서 헌법판례를 보통 어느 범위까지 배우고 있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핵심쟁점과 결론 위주	16	4	8	19	47
②판결요지 소개	5	1	3	8	17
③판례 본문 중 법정의견 소개	4	3	3	4	14
④판례 본문 중 법정의견 + 별개의견, 반대의견 소개	11	6	1	8	26
⑤판례 본문(법정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 분석 및 평가	23	10	4	14	51
기타	1	1	1		3
무응답			1	2	3
<b>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그룹A, B와 그룹C, D는 헌법판례를 배우는 범위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자는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배우고(⑤판례 본문(법정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 분석 및 평가) 후자 그룹은 상대적으로는 간략하게 배우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룹D가 C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배우는 비율이 높은 것은, 한양대 교양 과목에서 판례세미나 형식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다만 이 문항에서 실제와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같은 수업에서도 판례를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판례는 자세하게, 덜 중요한 판례는 간략하게 결론이나 요지 위주로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인데(혹은 요지만 얘기하면서 평가를 자세하게 한다든가 하는 또 다른 조합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배우고 있는지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구분하였다.

교수들의 인식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룹A의 정문식 교수님은 주로 ①핵심

쟁점과 결론 위주로,<sup>21)</sup> 발표자는 ⑤판례 본문(법정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 분석 및 평가 위주로, 그룹B의 유은정, 정애령 교수님은 각각 ③판례 본문 중 법정의견 소개 또는 ④판례 본문 중 법정의견 + 별개의견, 반대의견 소개 정도 라고 밝혔고, 그룹C의 김수용 교수님은 판례를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나 임용시험 준비와 수업시간의 제약상 자세하게 가르치지 못한 다는 견해를, 그룹D에서 정애령 교수님은 ①핵심쟁점과 결론 위주 또는 ②판결 요지 소개 정도로, 한양대 교양은 전반부 정광현 교수님은 ②판결요지 소개 중 심으로, 후반부 서기석 석좌교수님은 ⑤판례 본문(법정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 분석 및 평가 중심으로 파악된다.

7-2. 현재 수강중인 헌법과목에서 헌법판례를 어느 범위까지 배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핵심쟁점과 결론 위주	12	3	4	17	36
②판결요지 소개	6	1		8	15
③판례 본문 중 법정의견 소개	8	1	1	3	13
④판례 본문 중 법정의견 + 별개의견, 반대의견 소개	12	7	3	10	32
⑤판례 본문(법정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 분석 및 평가	22	13	11	17	63
기타			1		1
무응답			1		1
<b>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학생들의 헌법판례 공부범위에 대한 기대수준도 대체로 그룹A, B가 그룹C, D에 비해 자세히 배우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는 것에 비해 자세히 배우고자 하는 기대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유독 그룹C에서 판례를 자세하게 배우고자 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은 특기할 만하다.<sup>22)</sup>

21) 정문식 교수님은 행정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고시나 공무원시험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도 진행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뒤의 평가형태에서도 연결된다.

22) 설문조사 주관식 내용과 담당교수 의견도 참조.

8-1. 학부 교육 전체적인 측면에서 헌법과목에서의 헌법판례 교육의 비중이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그렇다	14	7	6	9	36
②그렇지 않다	2			1	3
③지금 정도가 적당하다	26	8	6	27	67
④과목 성격에 따라 다르다	18	10	8	18	54
무응답			1		1
<b>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8-1 헌법판례 교육의 비중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그룹A, B, C에서는 약 25% 내외의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반면(그룹A는 대부분 1학년 2학기를 다니는 저학년생임을 고려하면 다소 적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있다), D는 상대적으로 긍정이 낮은 비율이다.

(8-1.에서 ①을 택한 경우) 8-2. 헌법판례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야 한다고 보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법학전공분야에서 헌법판례 다루는 전공과목(예: 헌법사례연구) 추가 개설	7	6	3	2	18
②비법학분야에서 헌법판례 다루는 전공과목(예: 표현의 자유 판례연구) 추가 개설	1	1	2	4	8
③헌법 관련 교양과목 추가 개설	4	2	2	8	16
④기존 수업 내 이론강의 비율 축소와 판례교육 확대	3			3	6
무응답	45	16	14	38	113
<b>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8-1.에서 ②를 택한 경우) 8-3. 헌법판례 교육이 약화되어야 한다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야 한다고 보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헌법 전공과목 축소 또는 폐지				1	1
②헌법 관련 교양과목 축소 또는 폐지		1			1
③기존 수업 내 판례교육 비율 축소	2	1	1	4	8

무응답	58	23	20	50	151
<b>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8-2를 보면, 그룹A, B는 전공과목 확대의 형태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했고, 그룹C, D는 교양과목 확대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의 수강 편의와 접근성에 따른 구분이 아닌가 추정된다. 그리고 8-3을 보면, 헌법판례 교육이 약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 중에서는 ③기존 수업 내 판례교육 비율 축소를 선호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음을 볼 수 있다.

9-1. 현재 수강중인 헌법과목에서 제시되는 헌법판례를 공부할 때 주로 어떤 자료를 참고하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교강사 강의안	28	18	10	43	99
②헌법 교과서 또는 입문서	14	2	1	1	18
③별도의 판례 교재	3			1	4
④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사이트	15	4	7	4	30
⑤네이버, 구글 등 포털 검색		1	1	6	8
기타			1		1
무응답			1		1
<b>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9-1에서도, 수업에서 특정한 헌법교재를 지정하면서 교강사 강의안도 제공하는 경우에는 ①교강사 강의안 ②헌법 교과서 또는 입문서를 모두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설문이어서, 질문을 더 명확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듯하다. 다만 ‘주로’ 어떤 자료를 참고하느냐는 물음으로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sup>23)</sup>

헌법판례공부의 주요 레퍼런스로는 그룹에 관계없이 교강사 강의안을 가장 많이 참고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그룹D가 압도적인 비율로 교강사 강의안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교양과목의 특성상 별도의 교재나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기보다는 해당 수업 내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룹D에서 교재를 지정하는데 부담을 느끼지만 대신 충실한 자료를 제공했을 가

23) 그룹A 정문식 교수님은 교재와 강의안을 동시에 제공하고, 발표자는 강의안 만을, 그룹B의 유은정 교수님은 교재로 헌법재판실무제요를 지정하고 강의안 제공, 정애령 교수님은 강의안만, 그룹C는 파악이 되지 않았고, 그룹D는 정광현, 정애령 교수님 두 분 다 강의안만 제공하고 있었다.

능성도 있다.

교강사 강의안 다음으로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그룹A에서 교과서 활용 비중이 유독 높은 것은 정문식 교수님이 교과서를 지정하고 있기 때문이었고, 그룹B에서 유은정 교수님은 교재를 지정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를 강의안으로 인식한 것인지 다소간 통계의 혼동이 보인다.

9-2. 다음 중 어떤 자료를 활용하면 헌법판례를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교강사 강의안	19	11	8	26	64
②헌법 교과서 또는 입문서	17	3	2	3	25
③별도의 판례 교재	11	1	3	2	17
④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사이트	8	8	6	8	30
⑤네이버, 구글 등 포털 검색	1	2		4	7
⑥유튜브 등 시청각자료	4		1	11	16
기타				1	1
무응답			1		1
<b>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9-1과 비교해서 학생들이 희망하는 레퍼런스로 가장 높은 비율의 상승폭을 보인 것은 그룹A에서는 ③별도의 판례 교재, B에서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사이트, C는 별도의 판례 교재 D는 ⑥유튜브 등 시청각자료로 각각 편차를 보인다.

별도의 판례 교재에 대한 희망이 증가한 부분은, 기존의 교과서나 강의안만으로 판례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충분치 않았고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고 싶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룹D는 유튜브 등 시청각자료와 포털 검색 및 현재 사이트에 대한 선호가 골고루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교양과목 수강생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터넷과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10. 수업에서 제시되는 헌법판례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법학 전반에 대한 공부와 이해의 부족	24	5	7	29	65
②헌법 전반에 대한 공부와 이해의 부족	20	7	7	12	46
③헌법소송법에 대한 공부와 이해의 부족	1	2	2	2	7
④중요판례 외에 덜 중요하고 지엽적인 판례까지 과도한 공부 분량	4	4		1	9
⑤헌재판례의 불친절하고 난삽한 용어와 문장	7	7	2	10	26
⑥교강사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불충분해서			2		2
기타*	4				4
무응답			1	1	2
<b>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헌법판례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그룹A, C, D는 법학과 헌법 전반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그룹B는 법학 전공자들이고 비교적 고학년 수강자들이어서 상대적으로 이 사유는 적게 응답했다. 반면에 그룹B는 헌재판례의 불친절하고 난삽한 용어와 문장, 중요판례 외에 덜 중요하고 지엽적인 판례까지 과도한 공부 분량에 대한 비율이 법학과 헌법 공부의 부족과 비슷한 수준의 양상을 보였다. 그룹D도 ⑤헌재판례의 불친절하고 난삽한 용어와 문장을 드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10/55), 그룹A도 그러함을 보면(7/60), 법률문장을 순화함과 동시에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11. 헌법판례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네이버, 유튜브 등 검색으로 해결한다	23	6	10	39	78
②교과서 관련 부분을 찾아본다	18	9	1	1	29
③학원교재의 관련 부분을 찾아본다	3		2		5

④관련 논문이나 판례평석을 찾아본다	5	4	3	4	16
⑤교강사에게 질문한다	6	1	3	4	14
⑥친구나 선배에게 질문한다	3	2	1	1	7
⑦모른 채로 넘어간다	2	3		4	9
기타				1	1
무응답			1	1	2
<b>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설문 11은 나중에 보니 설문 9-2와 다소 중복적인 느낌도 있었는데, 차이를 들자면 설문 11의 경우는 자료에 국한하지 않고 질문 등 더 포괄적인 방법을 물어본 점이다. 그리고 9-2는 판례를 1차적으로 찾아서 읽는 자료의 성격으로 이해했을 것 같고, 11은 의문이 있을 경우 해결책을 찾는 방안으로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9-2에서 교강사 강의안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데 비해서, 11에서는 그룹A, B C, D 모두에서 ①네이버, 유튜브 등 검색으로 해결한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특히 그룹D는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검색에 의존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교양수업의 경우 전문자료보다는 검색에의 의존도가 월등히 높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룹A, B는 그룹C, D에 비해서 ②교과서 관련 부분을 찾아본다는 비율이 현저히 높은 점도 주목할 수 있다.

기타 응답 중에 ‘인강’ 을 적은 학생이 있었는데, 실제로 과거 학생들과의 대화 중 인강을 듣는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었고, 그런 수요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2-1. 귀하는 헌법판례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헌법과목 수업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단, 코로나라는 지금의 특수 상황을 전제하지 말고,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할 것)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온라인 녹화강의(대형)	18	9	3	8	38
②온라인 실시간화상강의(대형)			2	2	4
③온라인 토론식 수업(소규모)	2	1	3	7	13
④오프라인 강의(대형)	18	4	3	21	46
⑤오프라인 토론식 수업(소규모)	17	11	3	14	45

⑥플립러닝(Flipped Learning)(대형 또는 소규모)	5		5	3	13
기타*			1		1
무응답			1		1
<b>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그룹A, B, C, D 모두 오프라인 수업(④오프라인 강의(대형) ⑤오프라인 토론식 수업(소규모)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기는 했으나(그룹D가 가장 높은 오프라인 선호를 보임 35/55), ①온라인 녹화강의(대형)에 대한 선호도 무시 못할 수준이어서(특히 그룹A, B가 더욱 그러함), 코로나 시대의 계속이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적응도를 높였다고 보인다. 그룹C는 조사결과 상당히 다채로운 부챗살 모양의 분포를 보였고, 오늘날 새로운 교육방법론으로 각광받고 있는 ⑥플립러닝(Flipped Learning)에 대한 비율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서,<sup>24)</sup> 교육방법론에 대한 학습도와 이해도가 높은 사회교육과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sup>25)</sup>

실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교수자에게 확인한 결과 그룹A의 발표자와 정문식 교수는 온라인 녹화강의를, 그룹B의 유은정 교수는 온라인 녹화 + 온라인 토론식 수업을 병행하였고, 정애령 교수는 온라인 녹화강의, 그룹D의 정애령 교수는 온라인 녹화강의, 정광현/서기석 음니버스 강의는 전반부 정광현 교수는 녹화강의, 후반부 서기석 석좌교수는 온라인으로 판례세미나를 하고 있었다(그룹 C는 아직 확인 못했으나, 2020-1학기는 코로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강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서 정문식, 유은정, 정애령 교수님 모두 ⑤오프라인 토론식 수업(소규모)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정광현 교수님은 ④오프라인 강의(대형) + ⑤오프라인 토론식 수업(소규모)를 접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제한적 범위에서 문답식 방법론을 가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설문작성시에 미처 생각을 못했고, 아마 지금 법과목 현실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소크라테스식(문답식) 교수법도 답항의 하나로 추

24) 예컨대 곽한영,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기법을 활용한 법교육 수업모델 연구 - 대학 학부 헌법 수업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 법교육연구 11(1), 2016.04; 송성민,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본질에 입각한 비판적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2019.03 참조.

25) 담당 교수님께 추가적으로 문의

가할 필요는 있었겠다는 생각도 든다.

12-2. 귀하가 위 12-1.에서 선택한 수업형태가 헌법판례교육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근거를 들어 서술해 주세요.

12-1 응답	서술답변
① 응답 (온라인 녹화 강의)	<p>개인적으로 스스로 화상강의가 훨씬 집중이 잘되는 경향이 있으며 교수님 들도 확실히 실시간보다는 녹화강의일 때 말 정리를 더 잘 해주시는 것 같다. 그리고 헌법수업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좋고, 법학을 배우 지 않는 사람들도 그나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므로 소규모보다는 대형강의가 바람직 한 것 같다.</p> <p>녹화강의를 통해 먼저 강의(판례)의 핵심사항과 쟁점에 대해 이해하고,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한 부분은 잠시 강의를 멈추거나 강의를 끝난 후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녹화강의 + 인터넷 활용이 헌법판례교육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p>
② 온라인 실시간	<p>비전공자에게는 헌법관련 주제가 생소해 능동적으로 참여해야하는 토론식 수업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온라인으로서 적절한 시청각자료로 흥미와 이해를 키우는 식으로 하는게 효과적일 것 이라고 생각된다.</p> <p>실시간 화상강의 시간을 통해 그날 강의에 대해 의문이 생길 때 바로 해결할 수 있고, 교수님과 학생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p>
③ 온라인 토론	<p>사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다양한 관점에서 사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온라인으로 하면 더 자신있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 토론 정리가 원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보다 소형으로 진행해야 의견교류가 활발해 질 것 같습니다.</p> <p>학생-교수자 간 의견 나누기가 용이하고, 이해가 어려운 것도 답을 받기가 빠를 것이다. 또한 소규모인 만큼 연대감도 끈끈해져 공부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p>
④ 오프라인 대형	<p>1) &lt;교양과목&gt;으로 듣는 이상, 토론등을 통해 좁은 범위를 깊게 공부한다기보단 &lt;강의를 통해 헌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관심유발을 우선시&gt; 하는게 보다 나을것으로 보이는 점, 2)효과적인 학습에 있어 &lt;플립러닝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gt;되지만, 한 학기를 기준으로 강의가 진행 되기에 헌법에 대한 상당한 이해와 지식 수준이 전제 되는 적극적인 &lt;토론이 시간적 한계로 인해 어려울 것&gt;으로 보이는 점, 3) 강의 수업을 방해 하는 요소들이 비교적 많은 온라인 강의에 비해 오프라인 강의는 그렇지 않은 점</p> <p>교양 헌법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온라인 녹화강의 진행 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코로나가 어느정도 안정화 된다는 전제 하에 오프라인 강의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양 헌법과목에서 (소규모)토론식 수업은 타전공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p>

	<p>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프라인 강의(대형)이 교향 헌법과목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p> <p>많은 학생들이 수강해야 하며 법의 경우 토론과 같은 의견 교환 보단 개념이해 위주기 때문에 오프라인 대형강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p> <p>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교육이 교강사와 학생 간의 소통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고 토론식 수업은 판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기 보다는 그저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듣는 수준에 그칠 것 같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가 바람직할 것 같다.</p> <p>온라인은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오프라인 수업은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고 보다 생생한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판례교육의 경우 토론식 수업보다는 다양한 판례를 접하고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대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p> <p>헌법이라는 소재 자체가 다소 어렵고 난해한 편이므로 교강사가 실시간으로 학생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p>
<p>⑤ 오프라인 토론</p>	<p>대규모 청중을 대상으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1)번 또는 (3)번 형태의 수업방식은 대개 헌법판례를 단지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만 가볍게 배우고 넘어갈 것인데, 이는 대학이 아니라 학원가에서 실용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강의에서나 다름 법한 수업 방식이다. 대학에서 진행되는 헌법판례교육은 실용성보다는 학문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현재결정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비판하기 위한 안목배양을 위해 가장 적절한 수업방식은 (5)번과 같은 소규모 청중을 대상으로 수업이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p> <p>우선 어떤 방식이 됐건 오프라인 수업이 온라인 수업보다 학습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교강사와의 상호작용도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고 강의에 대한 집중력도 달라진다. 또한 대형 강의보다는 오프라인 토론식 수업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앞서 언급한 교강사와의 상호작용과 집중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판례 교육의 특성상 기본적인 헌법 개념과 판례의 논리를 교육받은 다음 법정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중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토론한다면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 같다.</p> <p>토론을 위해 사전에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수업시간에 토론을 하면서 같은 판례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p> <p>판례교육의 핵심은 그러한 결정(판결)을 내리기까지의 과정 전반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거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토론식 수업이 가장 적절하다.</p> <p>판례라는 것은 기본적인 이론 학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그러한 판례가 나오게 된 근거를 분석하고, 어떤 맹점, 쟁점, 주제 등이 드러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에는 단순히 판례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는 수업밖에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판례들 자체를 중점적으로 깊게 파고들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

	<p>판례에 대한 교수님의 평가 및 의견을 듣는 것도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지만, 학생이 직접 그에 대해 어떤 근거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원리와 적용이 학습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 후 교수님께서 정리해주는 식으로 평가 및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더 큰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 <p>헌법 판례의 경우 많은 수를 빠르게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 두개의 사건을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공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오프라인식 소규모 토론식 수업이 가장 적절하다.</p> <p>헌법의 경우, 다른 판례에 비해 토론형으로 논의될 수 있는 쟁점들이 많은 편이다. 이를 교사, 강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수업형보다 학생들 간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고 이야기하는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면 헌법, 헌법재판, 그 판례들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p> <p>헌법재판소 판례의 경우 그 판례를 읽는 사람들의 견해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p> <p>또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무조건 '정답'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수업에서 기본권을 다룰 때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따라서 판례를 읽고 그 판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한 후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한다면 훨씬 더 헌법판례교육이 비판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상 '하브루타식교육'도 좋습니다. 단순히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헌법판례에 대해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수정하고 서로의 생각을 보완한 후 토론 수업을 진행한다면 저는 그보다 질 높은 수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p>
<p>⑥ 플립러닝</p>	<p>미리 학습을 한 상태에서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는 것(토론)이 여러 의견 공유가 가능하고, 향후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매우 의미있게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해 여러 조항을 찾아 볼 수 있는 점이 수업 진행에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p> <p>법 특성상 일반인이 판례를 보고 즉각적으로 이해하기에 어려운 단어와 유기적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를 제대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학생 스스로 판례를 공부하여 나름의 해석을 하고 이를 강사의 해석과 비교하여 맞춰가는 방식이 가장 헌법판례교육에 적합하다 판단됩니다.</p> <p>온라인 강의로 핵심적인 부분을 정돈되게 배운 다음, 오프라인 강의에서 그 배운 내용에 대한 생각할 거리들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p>

위 주관식 답변은 훨씬 많은 답변 중 대표적인 답변 일부만 추려보았다. 대략의 경향을 보면, ①온라인 녹화강의(대형)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반복학습 가능과 멈춰가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요인이었고, ④오프라인 대형 ⑤오프라인 토론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집중도가 더 높고 전달과 피드백이 잘 될 수 있다는 요인을 꼽았다.

13-1. 헌법과목에서 헌법판례를 가장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험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객관식, 단답형, OX	21	6		22	49
②주관식 사례형	22	7	9	10	48
③주관식 논술형	12	3	7	12	34
④소논문 또는 보고서 작성	2	9	3	8	22
⑤집단 토론 <sup>26)</sup>				3	3
기타*	2		1		3
무응답	1		1		2
<b>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그룹A, B, C, D 전반적으로 ②주관식 사례형 또는 ③주관식 논술형을 뽑은 비율이 높았지만, 그룹A는 ①객관식, 단답형, OX의 비중도 상당히 높았고, B는 ④소논문 또는 보고서 작성의 비율도 높았으며, D는 ①객관식, 단답형, OX의 비중도 상당히 높았다.

위 학생들의 설문결과는 당해 수업에서 어떤 시험형태를 택하고 있는가와 연계성이 높아보였다. 그룹A에서 발표자는 주로 ②주관식 사례형 또는 ③주관식 논술형을, 정문식 교수는 ①객관식, 단답형, OX를,<sup>27)</sup> B에서 유은정 교수는 ②주관식 사례형과 ④소논문 또는 보고서 작성을, 정애령 교수는 ④소논문 또는 보고서 작성을, D에서 정광현 교수는 ①객관식, 단답형, OX과 ②주관식 사례형을 함께 평가한다고 밝혔다.<sup>28)</sup>

26) 이 문항은 ‘발표 및 토론’으로 하든지 아니면 문항을 나누어 집단 토론 / 그룹별 토론으로 하면 더 정확한 의미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다. 다만 이 문항을 택한 경우는 극소수여서 설문 결과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 요소는 아니라고 보인다.

27) 정문식 교수는 교양 수업이었다면 주관식 사례형을 택했을 것 같다고 밝혔다.

28) c와 d의 정애령 교수는 확인 못함. 정광현 교수는 현재 정책학과의 헌법과기본권 수업 분반도 맡고 있는데, 이 수업 학생들은 법전원 진학 비율이 높으므로 주관식 사례형으로 내고 있다고 밝혔다.

13-2. 13-1.의 시험형태를 택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고, 수업을 통해 객관식 헌법시험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다	23	6	4	20	53
②헌법 서술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이후에 도움이 될 것이다	22	5	1	7	35
③헌법을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6	10	9	11	36
④다양성을 존중토록 하고 비판의식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7	3	5	12	27
기타*			1	2	3
무응답	2	1	1	3	7
<b>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설문 13-2는 13-1의 답항에 대체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구성해 본 것인데, 그룹A, B는 대체적으로 연동이 되었다고 보이나, 그룹C, D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답안 분포를 보였다. 그룹C, D는 상대적으로 ④를 많이 택해서 시민교육에 더 의의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13-1	13-2
①객관식, 단답형, OX	①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고, 수업을 통해 객관식 헌법 시험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다
②주관식 사례형	②헌법 서술형 시험에 대비할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이후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③주관식 논술형	
④소논문 또는 보고서 작성	③헌법을 이론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⑤집단 토론	④다양성을 존중토록 하고 비판의식을 길러줌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14. 헌법과 법학 전공과목 외에, 헌법판례를 다음 중 어떤 학문 분과 수업에서 활용하면 가장 높은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그룹A	그룹B	그룹C	그룹D	합계
①정치(외교)학	20	4		14	38
②행정학	17	4	2	8	31
③철학(법철학, 정치철학 등)	17	8	5	5	35
④사회교육학	1	1	5	2	9
⑤사회학	1	4	4	14	23
⑥언론학			3	2	5
⑦말하기 또는 글쓰기 교양과목	1	1		8	10
⑧특별히 없다	3	3		2	8
기타			1		1
무응답			1		1
<b>합계</b>	<b>60</b>	<b>25</b>	<b>21</b>	<b>55</b>	<b>161</b>

설문 14는 법학과 다른 학문의 융합교육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은 문항인데, ①정치(외교)학 ③철학(법철학, 정치철학 등) ②행정학 ⑤사회학 ⑦말하기 또는 글쓰기 교양과목의 순으로 높은 응답을 얻었다. 그룹A에서 이들 과목이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PPEL교육과정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D에서는 ①정치(외교)학과 함께 ⑤사회학 ⑦말하기 또는 글쓰기 교양과목이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이 눈에 띈다(특히 교양의 비중이 다른 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사회교육학이 생각보다 저조한 부분은 다른 학생들이 사회교육학과의 교육 과정에 어둡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되며, 상대적으로 사회교육과 학생들은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5/21). 또한 대구대 학생들의 15. 주관식에 대한 답을 보면, 법학과목과 헌법판례사례에 대한 수요가 상당하다는 경향성을 알 수 있었다(7건).<sup>29)</sup>

15. 이상의 설문 외에 학부에서의 헌법판례교육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수정·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 혹은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식 답안, 생략)

29) 교수님들께도 질문을 드려 보았으나 각기 다양한 의견을 주셨다.

## IV.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뉴노멀: 교육목표에 따른 다양화·개별화 및 융합교육 강화

### 1. 법전원 도입 이후 법학 및 법교육 체계 전반의 개혁과 통합적 논의

학부 헌법판례교육의 문제는 그 자체로 논할 부분들도 많지만, 우선 거시적으로 법전원 도입 이후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체계에 대한 재검토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과 상부로 끊임없이 집중되는 ‘소용돌이의 한국문화’를 고려하면, 단순히 어느 일부의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고, 먹이사슬의 가장 상부에 위치한 법전원을 정상화하는 것이 학부 헌법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중요성과 시급성을 가진다.

우선, 1. 현재의 법전원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1) 유지한다면 가장 많이 비판받는 인가주의, 정원 제한, 낮은 합격률 규제, 변호사시험 방식 등에서 소폭의 변화를 줄 것인가, 아니면 (2) 학부 법과대학 혹은 법학과를 다시 설치하여 기초 법학과 법이론 교육을 주로 담당하도록 하고, 법전원에서는 과거 사법연수원과 유사한 수준의 실무 및 심화된 전문교육을 주로 담당하도록 대폭 변화를 줄 것인가, 혹은 2. 법전원 체제의 근본적인 개혁, 예컨대 사법시험 체제로의 회귀나 학부 로스쿨의 도입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sup>30)</sup>

발표자는 1의 (2)와 같은 방식의 변화도 규범적·제도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경우 법전원 설치대학 학부에 법과대학 혹은 법학과를 두어 기초·이론 법학의 전진기지로 삼고,<sup>31)</sup> 이들 중에서 법학 학문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일반대

30) 사법시험 재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것은 지금에 와서 동력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또한 사법시험의 폐해 또한 적지 않았기에 사법시험 부활이 법학교육 위기의 확실한 해결책인지도 단언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도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연이어 선고하였고(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헌재 2012. 4. 24. 2009헌마608등; 헌재 2018. 2. 22. 2016헌마713등; 헌재 2020. 10. 29. 2017헌마1128), 또한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선고해왔다(헌재 2016. 9. 29. 2012헌마1002등; 헌재 2017. 12. 28. 2016헌마1152등; 헌재 2020. 10. 29. 2017헌마1128).

31) 발표자는 현재의 법학 학사학위과정 금지 규정(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학사학위과정의 폐지) 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입법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폐지하지 않더라도 학문의 자유에 반해 위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실제로 각 대학에서 법학 학사학위과정을 부활시킬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공론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문제이므로, 위 금지규정을 폐

학원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고 이들이 장차 학부 및 일반대학원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이론/학문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의 자유에 기반한 법이론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는 것은, 법실무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대학을 포함한 시민사회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의 거버넌스를 실현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들 중 다수는 졸업 후 법전원에 진학하여 실무를 담당하면서 그동안 지적되어온 법전원의 단기 교육연한으로 인한 법소양과 전문성 부족의 우려를 씻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32)</sup> 개인적으로는 규범적·제도적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설치나 허용범위 등을 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경우 과거 사법시험체제의 학부 법학교육이 가지는 일정한 한계를 고려해 상당한 변화는 수반되어야 할 것인데, 과거보다 기초·이론에 치중하면서 융합교육을 활성화하고, 또 법전원과 중복되는 교육내용은 가능한 지양하고 지나치게 대규모로 운영되는 것은 제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의 (2)와 같은 방식이 상당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정도의 변화 내지 개혁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선 기왕의 25개 법전원들이 그러한 방식을 수용할지 의문이고, 또한 대학의 기존 다른 학과 단위들과의 조율 문제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현재의 법전원이 종래와 같이 이론교육 전반 및 실무교육 일부를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되 기왕에 가장 문제로 지적됐던 정원이나 시험 등의 문제를 개혁하는 소폭 개혁의 전제 하에서(1의 (1)의 경우) 학부 헌법 및 헌법판례 교육의 뉴노멀을 고민해보는 것이 실익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 2. 법전원 도입 이후 학부 법학교육 형태의 변화 양상과 헌법판례의 중요성

법전원 도입 후 가장 크고 핵심적인 변화는 전통적인 법학교육의 무게 추가 법전원으로 이동하면서 법전원 설치대학의 학부에 법학교육의 공백이 크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작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법전원의 법학교육은 향후 변호사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적 목표를 분명하게 가진 전문대학원이고 엘리트 교육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부 법학교육을 대체할 수는

지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법학부의 일률적인 도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32) 유사한 견해로, 가령 박찬운, “영국 법학교육의 현실과 그것이 한국 로스쿨 교육에 주는 함의”, 저스티스 159, 2017.04 참조.

없기 때문이다. 학부 법학교육은 사법(司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법이 소용되는 모든 분야의 전문법학 교육을 포괄할 수 있으며(입법, 행정, 기업, 시민사회 등), 또한 전문법학을 넘어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불문가지이다.<sup>33)</sup>

필자는 III.의 학생 설문조사 설계를 통해, 기왕에 필자가 이론적으로 제시한 전문/시민교육을 구분하되, 그 당시 논문이 주로 법전문원 설치대학의 학부 헌법교육에 치중되어 있었던 것에서 시야를 좀 더 확장하여, 전문교육을 다시 법전문원 설치대학 및 미설치대학의 전문교육으로 나누고, 시민교육을 사법대학에서의 법교육과 대학 교양과목으로서의 시민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했다(그룹 A B와 그룹 C, D의 대비).

법전문원 미설치대학의 법과대학 혹은 법학과의 경우(그룹 B), 기존의 법과대학이 수행해오던 전문 법학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되 그것이 과거와 같은 사법시험 준비가 아니라 법전문원 진학으로 변모하고, 또한 법전문원이 아닌 다른 직역을 대비한 법학교육과 혹은 법교육을 통한 시민의 양성을 포함하게 된다.<sup>34)</sup> 또한 그룹 C, D는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면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그중에서 과거보다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헌법이 있다는 점, 또한 헌법을 가르치는데 있어서 시민교육과 교양으로서의 헌법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전문법학에만 치중하던 시대와는 다른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오늘날 법전문원 설치로 인해 새롭게 등장하고 중요성이 커진 곳은 법전문원 설치대학의 학부 법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그룹 A). 이는 현재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학부에서는 융합교육으로서의 법학 또는 법교육(liberal arts 혹은 interdisciplinary studies)과 pre-law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가 하는 부분은 대학에 따라 다르다. 가령 융합전공, 자유전공으로 법학을 도모하는 한양대나 고려대, 성균관대 등의 경우, 법학을 전공으로 배울 수 있는 학부의 단위가 없이 교양과목의 강화의 차원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서울대나 연세대 등의 경우, 그리고 시민교육으로 초중등교육과 접점을 가지는 사회교육과의 법교육 등이 그러한 예 등의 발전 양상이 그러한 예이다. 앞의 설문조사를 보면, 학생들의

33) 윤성현, 앞의 논문.

34) 그룹 B의 전통적인 법학과 등이 폐지되거나 혹은 인접학과에 흡수, 통합되는 등의 변화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경찰행정학과와 법학교육 등 비법학 단과대학 등의 전문, 개별법학의 문제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정상우, “경찰행정학과와 학부 법학교육에 대한 평가와 전망”, 경찰법연구 15(1), 2017.06

의견, 그리고 담당하는 교수님들의 견해를 보더라도 이와 같은 변화의 모습들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과거 법과대학 시절의 기준을 답습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로스쿨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단순히 법전원 교육과정을 선행학습하는 방식의 프리로(pre law)로 기능하게 될 우려도 있는 만큼, 법전원 시대의 변화 양상에 맞추어 그룹 A, B, C, D는 모두 각자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여 뉴노멀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융합교육의 확대와 교양교육의 강화라는 명제를 일응 따르다면, 융합의 매개체로서 헌법과목의 중요성은 날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중에서도 헌법판례는 이러한 교육과정들을 연결해줄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될 수밖에 없다.<sup>35)</sup>

### 3. 미국 학사과정 헌법(판례)교육으로부터의 시사점: 버클리, 애머스트를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체제를 시행하는 미국에서 학부 법학교육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인식보다는 학부과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 중 학부에서 법학전공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종합대학으로 University of California - Berkeley,<sup>36)</sup> 노스웨스턴, 시카고 대학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버클리 법학과정(Legal Studies)은 법학분야 이수를 통해 인문학사(BA)를 받을 수 있고, 또 대학원 과정으로 일반법학박사학위(PhD)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이들을 로스쿨에서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sup>37)</sup>

버클리 학부에서 제공하는 과목들을 보면 헌법과 헌법판례의 비중이 높음을

35) 수평적 융합의 문제만이 아니라 초중등교육과 평생교육 등 시민교육 전반과의 수직적 융합으로서도 헌법과 헌법판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36) 2021 Best Colleges for Non-Professional General Legal Studies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https://www.collegefactual.com/majors/legal-studies-and-professions/general-legal-studies/rankings/top-ranked/>

37) Undergraduate Program

Legal Studies: BA (offered through the College of Letters and Science, although the program is under the academic supervision of the School of Law faculty)

Graduate Program

Jurisprudence and Social Policy: PhD (offered through the School of Law) <http://guide.berkeley.edu/undergraduate/departments/legal-studies/>

The Ph.D. in Jurisprudence and Social Policy <https://www.law.berkeley.edu/academics/doctoral-programs/jsp/about-the-program/>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세미나와 글쓰기 등 방식이 주종을 이루는 듯하다.<sup>38)</sup>  
가령 몇 과목의 예만 들면 아래와 같다.<sup>39)</sup>

Legal Studies Courses Spring 2021

39D: Current Political & Moral Conflicts & the Constitution Frosh/Soph Seminar, Pomerantz, 2 units, Area N/A

**\*\*This course is lower division and will not count towards the major.\*\***

There are two sections of 39D Spring 2019. Check the Berkeley Academic Guide Schedule for details.

We will read Supreme Court cases, as well as political and legal commentary from across the political spectrum, and consider not only the opinions of the Justices, but also why they hold those opinions. We will seek to discover the way in which courts use authority and craft law. Here is an article about the course (video included).

138 001: The Supreme Court & Public Policy, Ben Brown, 4 units, Core (SS) or Area IV or V (Check classes.berkeley.edu for day/time.)

This course examines a number of leading U.S. Supreme Court decisions in terms of what policy alternatives were available to the Court and which ones it chose. Prospective costs and benefits of these alternatives and who will pay the costs and who gets the benefits of them are considered. Among the areas considered are economic development, government regulation of business,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speech and discrimination. Readings are solely of Supreme Court decisions.

138 002: The Supreme Court & Public Policy, Elizabeth Tejada, 4 units, Core (SS) or Area IV or V (Check classes.berkeley.edu for day/time.)도 위와 동일

177: American Legal & Constitutional History, Brown, 4 units, Core (H) or Area II or III or V

This course explores the history of American legal institutions and doctrine from colonial times to the present. It deals both with the history of American constitutional law (through the study of major U.S. Supreme Court opinions) and with the development of certain important bodies of non-constitutional law, such as the law of property, the law of torts (civil wrongs), and criminal law. In exploring how American law has developed over time the course may serve as something of an introduction to our current legal and constitutional order.

38) <http://legalstudies.berkeley.edu/course-offerings/>

39) <http://legalstudies.berkeley.edu/legal-studies-courses-spring-2021/>

190.8: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Liberty/Equality, Alan Pomerantz, 4 units, Area IV or V

Personal liberty and inalienable rights have been a central tenet guiding our nation sinc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1776. The government was created to protect those liberties. But the founding documents were drafted by men of privilege who for decades occupied the important governmental and judicial positions of power. Accordingly, it was inevitable that the preservation of those privileges and the resulting inequities regarding race, the status of woman, sexual preference, gender and voting became imbedded. These inequities began to be addressed beginning with the Civil War, and accelerated after World War II wh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upreme Court began to mandate equality at the expense of certain individual liberties and privileges. Recently, the trend has moved back towards protecting individual liberties and historic privileges at the expense of mandated equal treatment. But now the constitutional arguments are different and are based on religious freedom, individual morality, an expanded definition of verbal and “non-verbal” speech and prohibitions on government mandated speech and behavior. In the coming terms, the Supreme Court will be asked to re-examine issues regarding religious freedoms, race, health care, gender, abortion, and self identity through the lens of the developing emphasis on individual rights and privileges.

The course will address the evolution of the Supreme Court’s and federal government’s

activities in areas where liberty and equality are in conflict. The goal is to understanding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and the likely outcome of decisions the Court will be asked to make that implicate the inherent conflict between individual freedom and mandated equality.

나아가 Law-related Courses Offered by Other Departments와 Legal Studies Prerequisites들도 제시되어 있는데, 법학 과정 자체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융합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다, 이 과정의 선수과목으로 통계학, 정치학, 역사학, 행동과학 과목 등을 제시하고 있어,<sup>40)</sup> 주목할 만하다. liberal arts college의 대표적인 애머스트 대학에서는 예일 로스쿨을 졸업한 학자들이 Law, Jurisprudence and Social Thought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도 버클리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sup>41)</sup>

전미변호사협회(ABA)의 법학교육 분야 섹션을 보면, 로스쿨에서는 학부에서 Problem solving, Critical reading, Writing and editing, Oral communication and

40) 올리버 웬델 홈즈의 말.

41) 이국운, “앰허스트로 가는 길”, 법사학연구 43호, 2011.4도 참조.

listening, Research, Organization and management, Relationship building and collaboration, Public service and promotion of justice, Exposure to law를 포함한 핵심 자질과 경험, 가치를 갖춘 전인적 인재를 중요하게 본다고 하여, 교양교육과 융합교육, 자유전공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우리의 경우에도 로스쿨 체제하에서, 학부 법학 교육이 법전원 교육의 단순한 반복이나 연장선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볼 수 있고, 따라서 법전원 진학에 유별나게 유리한 PRE LAW과정은 없으면서도, PRE LAW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부정적인 선행학습 등의 의미가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진정한 자질과 태도, 가치와 원리를 함양하는 방향의 전인교육과 자유교양인 교육이라면 이것은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키우는데 있어서 헌법교육, 특히 헌법판례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 수 있다. 이것은 학사과정 운영에서도 그러하고, 또한 그 전 단계인 시민교육 단계에서도 그러하다(CIVICS). 이것은 우리의 교양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 강화의 문제, 그리고 시민교육으로서의 자질함양을 위한 사회과에서의 헌법교육 강화, 확대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sup>42)</sup>

## V 결론

우리는 미국의 법학교육 시스템을 들여왔지만, 그것은 한국식 문화와 제도의 덧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의 로스쿨 제도를 들여올 때, 그 당시 미국 로스쿨이 가진 제도적 장점과 우리의 법학교육 제도가 가진 단점을 외형적으로만 비교했을 뿐, 그것이 미국적 토양에서 어떻게 구현되었고 어떤 한계와 비판을 받고 있는지, 우리 토양에 도입해서 작동시켰을 때 어떤 사회적 파급효를 가져올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특히 법전원의 도입이 학부 법학교육이나 초중등교육에 미칠 영향이나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고민 자체가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학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법전원의 변화도 함께 추진하고 모색해야 한다. 우리의 현실에서 학부는 학부 독자적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법전

42) 고등학교에서의 헌법판례교육 강화에 대한 언급으로, 배화순,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제시된 판례 분석과 개선 방안 탐색”, 법교육연구 15(2), 2020.08; 이효원,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 분석과 개선 모색 -헌법 분야-”, 법교육연구 9(3), 2014.12 등 참조.

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높아지고, 평가방식이 개선되는 등 변화가 있어야,<sup>43)</sup> 이에 따라 학부 법학교육도 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또한 초중등교육과 시민교육도 함께 가야 한다. 초중등교육에서부터 헌법과 헌법판례를 둘러싼 논의가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현재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권위를 갖는 것은, 정치의 사법화를 통해 대법원이 중요한 정책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매우 철학적, 사회과학적인 논변과 함께 깊이 있는 판결문을 작성하기 때문이며 이는 시민교육 단계에서부터 판례에 대한 논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선순환의 생태계를 이룬다.<sup>44)</sup>

또한 실무,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 현재 결정이 논증을 생략하고 경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최근에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다보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하의 교육에서도 논증과정을 둘러싼 논의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법전원의 교육이 바로서야 거기에 따라 학부의 법학교육도 좀 더 정상화될 여지가 크며, 또한 초중등 교육에서 헌법 및 헌법판례가 가지는 시민교육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그러한 가르침이 대학으로 이어질 때 지금보다 헌법판례교육의 수요가 확대되고 더 실질적인 글쓰기, 말하기, 논증과 추론, 합리적 토론 교육으로서의 헌법판례교육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전원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고, 또한 오랜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전통을 가진 유럽의 경험 등을 참고하면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3) 천경훈,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상사법연구 36권 1호, 2017 참조.

44) Annenberg Classroom <https://www.annenbergclassroom.org/best-civics-sites/> 를 대표로 하여, 미국 civics 주요 사이트들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판례를 논의하는 수준은 우리 대학 수준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법관들이 로스쿨은 물론 초중등 등 시민교육 수준에도 뛰어 들어서 실제로 교감하고 설명하는 부분 등도 주목할 수 있다. 헌법의 대중화への 노력은 국가 공동체 전반의 문제이다.

---

---

**한국법교육학회(Korea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1동 423호 (우: 08826)

**TEL:** 010-7275-3810

**E-mail:** lawedu@hanmail.net

**간사:** 김경래·정용현

**홈페이지:** 한국법교육학회 - lawedu.org

한국법교육센터 - www.lawedu.or.kr

법무부 법교육 홈페이지 - www.lawedu.go.kr

---